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기준 및 관련법령 (건축물/공원)

2022. 03.



사단  
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목차

|    |  |     |
|----|--|-----|
| 0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 5   |
| 02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13  |
| 03 | 용어의 정의 .....                           | 25  |
| 04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건축물) .....     | 31  |
| 05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공원) .....      | 135 |
| 06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189 |
| 0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01 |
| 08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27 |
| 09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규칙 .....        | 253 |
| 10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  | 267 |
| 1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참고 법령.....       | 273 |
| 12 | CSR 계수 .....                           | 283 |
| 13 | 경사로 기울기 .....                          | 287 |
| 14 | 자주 사용하는 점자표기문구 .....                   | 291 |

## 0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 1 개별시설에 대한 인증신청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사(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사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 2 인증 신청시기

- ① 예비인증 : 설계단계 (본인증 신청 전)
- ② 본인증 : 준공단계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3 인증 대상

- 지역
- 개별시설(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 4 인증 의무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5 인증 의무 적용시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739호, 2019. 12. 3.>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19호, 2021. 6. 8.>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6 기부채납 시설물의 의무대상 여부

※ 기부채납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시설입니다.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법적 의무 주체는 기부채납자가 아닌, 완공 후 시설을 소유 및 사용·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및 공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공건물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적합한 시설로 신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장애인등의 편익을 위해 규정된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7 인증 수수료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별표8]

### ① 개별시설 인증

1. 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부가세 별도 [단위 : 원]

| 면적구간(연면적) | 예비인증      | 본인증       | 인증 연장     |
|-----------|-----------|-----------|-----------|
| -         | 2,060,000 | 4,030,000 | 2,015,000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부가세 별도 [단위 : 원]

| 면적구간(연면적) |                      | 예비인증      | 본인증       | 인증 연장     |
|-----------|----------------------|-----------|-----------|-----------|
| 제1구간      | 300㎡미만               | 1,030,000 | 2,015,000 | 1,007,500 |
| 제2구간      | 300㎡이상 - 1,000㎡미만    | 1,648,000 | 3,224,000 | 1,612,000 |
| 제3구간      | 1,000㎡이상 - 3,000㎡미만  | 2,060,000 | 4,030,000 | 2,015,000 |
| 제4구간      | 3,000㎡이상 - 10,000㎡미만 | 2,472,000 | 4,836,000 | 2,418,000 |
| 제5구간      | 10,000㎡이상            | 3,090,000 | 6,045,000 | 3,022,500 |

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제5조의2제1항 관련) <개정 2021. 11. 30.>

| 대상 시설        |  |
|--------------|--|
| 1.제1종 근린생활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대피소  |
|              | 공중화장실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
|              | 지역아동센터   |
| 2.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              | 안마시술소  |
| 3.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및 관람장  |
|              | 집회장  |
|              | 전시장  |
|              | 동·식물원  |
| 4.종교시설       | 종교집회장  |
| 5.판매시설       |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
| 6.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 7.교육연구시설     | 학교   |
|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              | 도서관  |
| 8.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   |
|              | 노인복지시설   |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              |  |
|--------------|--|
| 9.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
| 10.운동시설      | 체육관,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 11.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
| 12.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  |
|              | 관광숙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시설   |
| 13.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 14.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              | 운전학원(운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 15.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16.교정 시설     | 보호감호소·교도소·구치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
| 17.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
| 18.관광 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              | 휴게소  |
| 19.장례식장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비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표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시설이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인증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  
(제5조의2제2항 관련) <신설 2021. 11. 30.>

| 시설주   | 대상 시설  |
|---|--|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  |
| 2. 「지방공기업법」 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  |
|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  |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외의 자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 02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4) 적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공동육아나눔터·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

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마. 총포판매소
- 바. 사진관, 표구점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자. 일반음식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타. 독서실, 기원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

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5. 문화 및 집회시설

-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6. 종교시설

-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 7. 판매시설

- 가. 도매시장(「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8. 운수시설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나. 철도시설
- 다. 공항시설
- 라. 항만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시설



## 9. 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2. 수련시설

-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제2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3. 운동시설

-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사. 도료류 판매소
-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 자. 화약류 저장소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가. 축사(양잠·양봉·양어·양돈·양계·곤충사육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 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작물 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가. 하수 등 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폐기물 처분시설
-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데이터센터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 가. 야외음악당
-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8. 장례시설**

-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비고

1. 제3호 및 제4호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實)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말한다)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2. 비고 제1호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가. 제4호더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나.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다. 구분 소유자(임차인을 포함한다)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함께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및 9)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외하되, 위 표에 따른 다른 용도의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 각 호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03 용어의 정리

---







## 용어의 정의 (건축물)

### 1 접근로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출입구에 이르는 모든 범위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2호

### 2 고원식 횡단보도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 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것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3 턱낮추기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 설치하는 것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보도와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4 기울기

· 보도 등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25분의 1 이하로 한다.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5 차량 진입억제 말뚝(블라드)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로 하고, 그 지름은 10~20cm로 함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함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함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m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2]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 6 보행장애물

보도 등에 설치된 가로등, 전주, 가로수 등으로 장애인등의 보도 상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든 노상시설을 포함하는 개념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2017.12(공공건물·공원·공동주택)

## 7 활동공간

-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 출입문 옆에 0.6m 이상 확보하는 공간
- 장애인용 승강기
  - : 승강기의 전면에는 1.4m×1.4m 이상 확보하는 공간
- 경사로
  -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 이상 확보하는 공간
-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
  - :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한 유효폭 0.75m 이상 확보하는 공간
- 대변기의 전면
  - :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 확보하는 공간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 용어의 정의 (공원)

### **1 도시공원**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 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

- 「공원녹지법」 제2조의제3호

### **2 공원시설**

-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한 법률 제2조의제4호 가목부터 카목까지를 말한다.
  - 「공원녹지법」 제2조의제4호

### **3 통합시설**

-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는 시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공원) 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산출기준

### **4 부분적인 통합시설**

장애인, 비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일부 구분되어 있는 시설

### **5 접근로**

- 공원 외부에서 주출입구까지 이르는 모든 범위
- 공원의 대지경계선에서부터 안내시설까지 이르는 범위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제2호

### **6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공원입구 까지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입하는 것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공원) 1.1.1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산출기준

### **7 고원식 횡단보도**

-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것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8 턱낮추기

횡단보도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에 설치하는 것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보도와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것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9 안전보행로(=보행안전통로)

차량에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공원) 1.1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0 BF보행로

내부 산책로 중 출입구~공원시설 간을 연결하는 주요보행로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공원) 5.1.1 BF보행로의 지정 평가방법

## 11 진출입통제 계획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 자가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공원) 1.3.1 진출입 통제 계획 평가목적

## 12 장애물구역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보도의 각종 설치물의 설치장소로 활용하는 것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공원) 1.1.6 보행장애물 산출기준

## 13 보행유도존

보행안전공간 양 측에 경계용 공간을 두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하는 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공원) 5.1.7 보행유도의 연속성 산출기준

## 0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건축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일부개정.]  
[별표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별표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 범주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1. 매개 시설 | 1.1 접근로         |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 B1-01-01 | 6  |
|          |                 | 1.1.2 유효폭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로 평가   | B1-01-02 | 3  |
|          |                 | 1.1.3 단차              |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 B1-01-03 | 3  |
|          |                 | 1.1.4 기울기             |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 B1-01-04 | 3  |
|          |                 | 1.1.5 바닥 마감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 B1-01-05 | 3  |
|          |                 | 1.1.6 보행장애물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 B1-01-06 | 2  |
|          |                 | 1.1.7 덮개              |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 B1-01-07 | 2  |
|          | 1.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 B1-01-08 | 6  |
|          |                 | 1.2.2 주차면수 확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 B1-01-09 | 4  |
|          |                 | 1.2.3 주차구역 크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 B1-01-10 | 4  |
|          |                 | 1.2.4 보행안전 통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 B1-01-11 | 4  |
|          |                 |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 B1-01-12 | 3  |

| 범주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 1.3<br>출입구(문)  | 1.3.1 출입구(문) 의 높이차이 |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 B1-01-13  | 6        |   |
|                | 1.3.2 출입문의 형태       | 해당시설의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                            | B1-01-14  | 3        |   |
|                | 1.3.3 유효폭           |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 B1-01-15  | 3        |   |
|                | 1.3.4 단차            | 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 B1-01-16  | 3        |   |
|                | 1.3.5 전면 유효거리       | 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 B1-01-17  | 2        |   |
|                | 1.3.6 손잡이           | 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 B1-01-18  | 2        |   |
|                | 1.3.7 경고블록          |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 B1-01-19  | 2        |   |
| 2.<br>내부<br>시설 | 2.1<br>일반<br>출입문    | 2.1.1 단차                                     |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 B1-02-01 | 3 |
|                |                     | 2.1.2 유효폭                                    |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 B1-02-02 | 3 |
|                |                     | 2.1.3 전면 유효거리                                |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평가                              | B1-02-03 | 3 |
|                |                     |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 B1-02-04 | 3 |
|                | 2.2<br>복도           | 2.2.1 유효폭                                    |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 B1-02-05 | 3 |
|                |                     | 2.2.2 단차                                     |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 B1-02-06 | 3 |
|                |                     | 2.2.3 바닥 마감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 B1-02-07 | 2 |
|                |                     | 2.2.4 보행장애물                                  |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 B1-02-08 | 2 |
|                |                     | 2.2.5 연속손잡이                                  |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 B1-02-09 | 2 |
|                | 2.3<br>계단           | 2.3.1 형태 및 유효폭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 평가             | B1-02-10 | 3 |
|                |                     | 2.3.2 철타면 및 디딤판                              | 계단에 철타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 정도 평가                        | B1-02-11 | 3 |
|                |                     | 2.3.3 바닥 마감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 B1-02-12 | 2 |
|                |                     | 2.3.4 손잡이                                    |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굽기로 평가                       | B1-02-13 | 2 |
|                |                     | 2.3.5 점형블록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 B1-02-14 | 2 |



| 범주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 2.4<br>경사로  | 2.4.1 유효폭                |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 B1-02-15                     | 3        |
|             |             | 2.4.2 기울기                |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 B1-02-16                     | 3        |
|             |             | 2.4.3 바닥 마감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 B1-02-17                     | 2        |
|             |             |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 B1-02-18                     | 2        |
|             |             | 2.4.5 손잡이                |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굽기로 평가                   | B1-02-19                     | 2        |
|             | 2.5<br>승강기  | 2.5.1 전면활동 공간            |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 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 B1-02-20                     | 2        |
|             |             | 2.5.2 통과 유효폭             |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 B1-02-21                     | 2        |
|             |             | 2.5.3 유효 바닥면적            |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 B1-02-22                     | 2        |
|             |             | 2.5.4 이용자 조작설비           | 내·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 B1-02-23                     | 3        |
|             |             |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 B1-02-24                     | 2        |
|             |             | 2.5.6 수평손잡이              |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 B1-02-25                     | 2        |
|             |             | 2.5.7 점자블록               |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 B1-02-26                     | 2        |
|             | 3.<br>위생 시설 | 3.1<br>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 B1-03-01 |
| 3.1.2 안내표지판 |             |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 B1-03-02                     | 5        |

| 범주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
| 3.2<br>화장실의 접근 | 3.2.1 유효폭 및 단차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B1-03-03  | 6  |          |   |
|                | 3.2.2 바닥 마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B1-03-04  | 4  |          |   |
|                | 3.2.3 출입구(문)   |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평가 | B1-03-05  | 3  |          |   |
|                | 3.3<br>대변기     | 3.3.1 칸막이 출입문   |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br>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 B1-03-06   | 5        |   |
|                |                | 3.3.2 활동공간  |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B1-03-07   | 3        |   |
|                |                | 3.3.3 형태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 B1-03-08   | 3        |   |
|                |                | 3.3.4 손잡이   |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 B1-03-09   | 3        |   |
|                |                | 3.3.5 기타설비  |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 B1-03-10   | 3        |   |
|                |                | 3.4<br>소변기  |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 B1-03-11 | 6 |
|                | 3.5<br>세면대     |   | 3.5.1 형태  | 세면대의 형태 평가                                       | B1-03-12 | 3 |
|                |                | 3.5.2 거울  |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 B1-03-13   | 3        |   |
|                |                | 3.5.3 수도꼭지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B1-03-14   | 3        |   |
|                | 3.6<br>욕실      | 3.6.1 구조 및 마감   |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B1-03-15   | 3        |   |
|                |                | 3.6.2 기타설비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B1-03-16   | 3        |   |
|                | 3.7<br>샤워기     | 3.7.1 구조 및 마감   |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B1-03-17   | 3        |   |
|                |                | 3.7.2 기타설비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B1-03-18   | 3        |   |
|                | 4.<br>안내 시설    | 4.1<br>안내 설비  | 4.1.1 안내판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 B1-04-01 | 4 |
|                |                |   | 4.1.2 점자블록  |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 B1-04-02 | 3 |

| 범주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               |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이용 안내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평가 | B1-04-03 | 3  |
|          |               |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 B1-04-04 | 3  |
|          | 4.2 경보 및 피난설비 | 4.2.1 시각·청각 장애이용 경보 및 피난 설비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 B1-04-05 | 3  |
| 5. 기타 시설 | 5.1 객실 및 침실   | 5.1.1 설치율                   |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 B1-05-01 | 5  |
|          |               | 5.1.2 설치위치                  |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 B1-05-02 | 5  |
|          |               | 5.1.3 통과유효폭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정도 평가  | B1-05-03 | 3  |
|          |               | 5.1.4 활동공간                  |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의 확보정도 평가   | B1-05-04 | 3  |
|          |               | 5.1.5 침대구조                  |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구조의 확보정도 평가   | B1-05-05 | 2  |
|          |               | 5.1.6 객실바닥                  |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정도에 따른 평가  | B1-05-06 | 2  |
|          |               | 5.1.7 유효폭 및 단차(화장실)         |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B1-05-07 | 3  |
|          |               | 5.1.8 유효 바닥면적(화장실)          | 화장실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B1-05-08 | 3  |
|          |               | 5.1.9 손잡이(화장실)              |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 B1-05-09 | 2  |
|          |               | 5.1.10 점자표지판(기타설비)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 B1-05-10 | 3  |

| 범주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 5.1.11<br>설치높이(기타설비) |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 B1-05-11 | 2  |
|  | 5.1.12<br>초인등(기타설비)  |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 B1-05-12 | 2  |
| 5.2<br>관<br>람<br>석<br>및<br>열<br>람<br>석                     | 5.2.1 설치율            |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 정도 평가   | B1-05-13 | 4  |
|  | 5.2.2 설치위치           |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B1-05-14 | 3  |
|  | 5.2.3 관람석의 구조        | 관람석의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 B1-05-15 | 4  |
|  | 5.2.4 열람석의 구조        | 열람석의 구조 평가  | B1-05-16 | 2  |
| 5.3<br>접<br>수<br>대<br>및<br>안<br>내<br>데<br>스<br>크           | 5.3.1 설치위치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 B1-05-17 | 2  |
|  |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 B1-05-18 | 3  |
| 5.4<br>매<br>표<br>소<br>·<br>판<br>매<br>기<br>·<br>음<br>료<br>대 |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 매표소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B1-05-19 | 2  |
|  |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B1-05-20 | 2  |
|  |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B1-05-21 | 2  |
| 5.5<br>피<br>난<br>구<br>설<br>치                               |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 B1-05-22 | 3  |
|  | 5.5.2 피난구의 구조        | 피난구의 구조 평가  | B1-05-23 | 3  |
| 5.6<br>임<br>산  |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B1-05-24 | 2  |

| 범주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 부<br>휴<br>계<br>시<br>설   | 5.6.2 내부 구조      |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설비 설치여부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가능여부로 평가 | B1-05-25 | 3          |
| 6.<br>기타<br>설비 | 6.1<br>비<br>치<br>용<br>품 |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 B1-06-01 | 3          |
|                |                         | 7. 종합평가          | 5%(평가항목의 총점기준)  | B1-07-01 |            |
| <b>총 지표수</b>   |                         | <b>94</b>        | <b>총 배점</b>   |          | <b>288</b>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평가항목  | 1.1.1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차량과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평가   |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보행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
|   | 최우수   |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
|   | 우수  |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
|   | 일반  |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는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대지내로 진입한 이후에 차량과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주출입구까지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한 경우에 해당함</li> <li>-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을 위한 재질과 색상을 달리 하여함</li> <li>- 지형구조상 부출입구가 주출입구를 대신할 경우, 부출입구를 주출입구로 평가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계획</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다만,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는 사진으로 대체 가능)</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1.2  | 유효폭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정도로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접근로의 유효폭</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td> <td>3.0</td> </tr> <tr> <td>우수</td> <td>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td> <td>2.4</td> </tr> <tr> <td>일반</td> <td>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td> <td>2.1</td> </tr> </tbody> </table> |   | 구분      | 접근로의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 3.0 | 우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 2.4 | 일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 2.1 |
|                         | 구분   | 접근로의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 3.0   |         |          |         |     |                       |     |    |                       |     |    |                       |     |
| 우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 2.4   |         |          |         |     |                       |     |    |                       |     |    |                       |     |
| 일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 2.1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li> <li>- 접근로의 유효폭이 1.2m이상일 경우 휠체어와 사람의 교행이 가능하고, 1.5m이상일 경우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며, 1.8m이상일 경우 휠체어끼리의 교행이 가능함</li> <li>-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의 폭이 1.8m이상인 경우 최우수로, 폭이 1.5m이상인 경우 우수로 평가하며, 폭이 1.2m이상 확보한 경우는 일반으로 평가함</li> </ul>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로 폭을 알 수 있는 사진</li> </ul>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매개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1.1 접근로  |         |         |         |     |             |     |    |                     |     |
| 평가항목                    | 1.1.3 단차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         |         |     |             |     |    |                     |     |
| 평가방법                    |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단의 높이차이 정도로 평가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접근로의 단차</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전체구간에 단차 없음</td> <td>3.0</td> </tr> <tr> <td>우수</td> <td>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td> <td>2.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li> <li>-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단차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활동공간에 단차가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li> </ul> | 구분      | 접근로의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 3.0 | 우수 |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 2.4 |
| 구분                      | 접근로의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최우수                     |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 3.0     |         |         |     |             |     |    |                     |     |
| 우수                      | 전체구간 중 일부에 단차 2cm이하  | 2.4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제출서류                    | <b>예비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레벨표시)</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b>본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         |     |                                    |     |    |                                   |     |
| 평가항목   | 1.1.4  | 기울기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의 정도 평가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접근로의 기울기</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4.17%/2.39°)이하</td> <td>3.0</td> </tr> <tr> <td>우수</td> <td>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td> <td>2.4</td> </tr> </tbody> </table> |   | 구분      | 접근로의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4.17%/2.39°)이하 | 3.0 | 우수 |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 2.4 |
|  | 구분   | 접근로의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최우수  |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 24(4.17%/2.39°)이하  | 3.0     |          |         |     |                                    |     |    |                                   |     |
| 우수   |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가 1/18(5.56%/3.18°)이하  | 2.4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출입구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li> <li>-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활동공간에 기울기가 1/18(5.56%/3.18°)이하인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li> </ul>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레벨표시)</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매개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1.1 접근로  |  |            |         |     |   |     |    |  |     |
| 평가항목   | 1.1.5 바닥 마감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         |     |   |     |    |  |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5%;">접근로의 바닥 마감</th> <th style="width: 20%;">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 이하인 경우임</td> <td>3.0</td> </tr> <tr> <td>우수</td> <td>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임</td> <td>2.4</td> </tr> </tbody> </table> | 구분   | 접근로의 바닥 마감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 이하인 경우임 | 3.0 | 우수 |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임 | 2.4 |
|  | 구분   | 접근로의 바닥 마감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최우수  |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0.5cm 이하인 경우임  | 3.0        |         |     |   |     |    |  |     |
| 우수   | 모든 출입 접근로 중에서 50%이상이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염려가 없는 재질,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인 경우임   | 2.4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li> <li>-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도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줄눈이 0.5cm이하이며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재료로 마감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줄눈이 1cm이하이며 미끄럽지 않은 평탄한 재료로 마감된 경우 우수로 평가함</li> </ul>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 (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바닥 마감 시공 평면 및 단면 상세도 (레벨표시, 재료마감 상세포함)</li> </ul> <p>※유형이 다른 바닥재 사용시 유형별로 제출</p>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평가항목                    | 1.1.6   | 보행장애물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 되고, 차도와외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정도로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보행장애물</li> </ul>  |   |
|                         | 구분  | 보행장애물   |
|                         | 최우수   |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이동식 화분 등의 장애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                         | 우수  | 접근로에 가로등, 간판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이 연속적으로 가능함  |
|                         | 평가항목 점수   | 1.0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로수가 있는 경우 높이 2.1m까지 가지치기 되어야함</li> <li>•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li> </ul>  |   |
|                         | 구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
|                         | 최우수   |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
|                         | 우수  |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
|                         | 평가항목 점수   | 1.0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li> <li>-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단, 보도의 일부를 차량과 완전분리한 경우는 최우수로 평가하나 완전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li> </ul> |   |
|                         | 구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
|                         | 최우수   |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차량과 보도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확보  |
|                         | 우수  |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
|                         | 평가항목 점수   | 0.8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li>- 접근보행로 상에 보행지원시설 및 설치물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보행접근로 사진 첨부)</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         |     |                           |     |    |                                      |     |
| 평가항목   | 1.1.7   | 덮개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이나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이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배수로 덮개</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td> <td>2.0</td> </tr> <tr> <td>우수</td> <td>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td> <td>1.6</td> </tr> </tbody> </table> |  | 구분      | 배수로 덮개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 2.0 | 우수 |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 1.6 |
|  | 구분  | 배수로 덮개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최우수   |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 2.0     |        |         |     |                           |     |    |                                      |     |
| 우수   |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 1.6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접근로 상에 배수로 등과 같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덮개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li> <li>- 건축물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대지내에서나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빠질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덮개를 설치하고 격자 구멍 등이 양방향으로 2cm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함</li> </ul>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li>- 배수로 덮개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덮개 관련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항목  | 1.2.1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   | 최우수   |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
|   | 우 수   |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
|   | 일 반   |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 이하로 설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범주)을 준수하여야 함</li> <li>-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li> <li>-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다른 요건이 만족되면 일반적으로 평가함</li> <li>-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제1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통로 계획)</li> <li>-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li> <li>- 주차면 설계 상세도</li> <li>-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계획</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                 |     |     |                              |     |
| 평가항목                    | 1.2.2   | 주차면수 확보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  |         |         |         |     |                 |     |     |                              |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차면수 확보</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td> <td>4.0</td> </tr> <tr> <td>우 수</td> <td>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td> <td>3.2</td> </tr> </tbody> </table> |  | 구분      | 주차면수 확보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 4.0 | 우 수 |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 3.2 |
|                         | 구분  | 주차면수 확보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최우수                     |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 4.0  |         |         |         |     |                 |     |     |                              |     |
| 우 수                     |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 3.2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li> <li>-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li> </ul>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li> <li>-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li> <li>-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계획</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매개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                                |     |    |                                |     |
| 평가항목                    | 1.2.3 주차구역 크기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 평가  |         |         |         |     |                                |     |    |                                |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주차구역 크기의 주차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주차구역 크기</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td> <td>4.0</td> </tr> <tr> <td>우수</td> <td>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td> <td>3.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구역 크기로 평가함</li> <li>-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li> </ul> | 구분      | 주차구역 크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 4.0 | 우수 |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 3.2 |
|                         | 구분  | 주차구역 크기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최우수                     |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 4.0     |         |         |     |                                |     |    |                                |     |
| 우수                      |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 3.2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제출서류                    | <b>예비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li> <li>-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li> <li>- 주차면 설계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b>본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항목                    | 1.2.4  | 보행안전통로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보행안전통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보행안전통로  |
|                         | 최우수  |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                         | 우수   |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                         | 일반   |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li> <li>-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li>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지라도 보행우선의 점점계획이 있을 경우 평가등급을 부여함</li> <li>-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li> <li>-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li> <li>- 주차면 설계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주차장 보행안전 통로 사진 첨부)</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항목                    | 1.2.5   | 안내 및 유도표시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
| 평가방법                    |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 및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안내 및 유도표시   |
|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
|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
|                         | 일반  |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li> <li>-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차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li> <li>-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li> <li>-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차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li> <li>-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li> <li>- 주차면 설계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유도 표시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3  | 출입구(문)   |
| 평가항목  | 1.3.1  | 출입구(문)의 높이차이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출입구(문)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출입구(문)의 안전하고 편리한 진입여부를 출입구(문)의 높이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출입구(문)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출입구(문) 높이차이</li> </ul>   |  |
|   | 구분   | 출입구(문) 높이차이  |
|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   | 우 수  | 0.75m이하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
|   | 일 반  | 0.75m이상 단차(1.2m이상 유효폭의 경사로 설치)   |
|   | 평가항목 점수  | 3.0<br>2.4<br>2.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li> </ul>  |  |  |
| 구분  | 출입구(문) 경사로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3.0  |
| 우 수   | 기울기 1/18(5.56%/3.18°)이하  | 2.4  |
| 일 반   | 기울기 1/12(8.33%/4.76°)이하  | 2.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li> <li>-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0.15m이상 높이의 경사로 설치 시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 설치</li> <li>- 경사로 위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한 경우 한 등급 높은 등급으로 평가</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 제1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도</li> <li>- 출입구 평면도</li> <li>- 출입구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3  | 출입구(문)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3.2  | 출입문의 형태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출입구(문)의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문을 설치하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해당시설의 출입구(문)의 형태로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출입구(문)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출입문의 형태</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td> <td>3.0</td> </tr> <tr> <td>우 수</td> <td>자동문 설치</td> <td>2.4</td> </tr> <tr> <td>일 반</td> <td>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td> <td>2.1</td> </tr> </tbody> </table> |  | 구분      | 주출입문의 형태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 | 3.0 | 우 수 | 자동문 설치 | 2.4 | 일 반 |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 2.1 |
|                         | 구분   | 주출입문의 형태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출입구(문)를 포함하여 모든 출입구의 출입문 중 60%이상 자동문 설치  | 3.0  |         |          |         |     |   |     |     |        |     |     |                              |     |
| 우 수                     | 자동문 설치   | 2.4  |         |          |         |     |   |     |     |        |     |     |                              |     |
| 일 반                     | 자동 닫힘 기능이 있는(도어체크 등) 여닫이문 설치   | 2.1  |         |          |         |     |   |     |     |        |     |     |                              |     |
|                         | <p>- 단, 회전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이 가능한 크기이며 속도조절 장치가 내장된 회전문으로 다른 형태의 출입문을 병행하여 설치 할 경우 최하등급을 부여</p>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br>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도</li> <li>- 출입구 평면도</li> <li>- 출입구 단면도</li> <li>- 창호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매개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3 출입구(문)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3.3 유효폭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출입구(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
| 평가방법                    |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         |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출입구(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유효폭</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td> <td>3.0</td> </tr> <tr> <td>우수</td> <td>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td> <td>2.4</td> </tr> <tr> <td>일반</td> <td>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td> <td>2.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li> <li>-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li> </ul>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 3.0 | 우수 |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 2.4 | 일반 | 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 2.1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출입구(문)의 유효폭 1.2m이상  | 3.0     |     |         |     |                    |     |    |                    |     |    |                    |     |
| 우수                      | 출입구(문)의 유효폭 1.0m이상  | 2.4     |     |         |     |                    |     |    |                    |     |    |                    |     |
| 일반                      | 출입구(문)의 유효폭 0.9m이상  | 2.1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제출서류                    | <b>예비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도</li> <li>- 출입구 평면도</li> <li>- 출입구 단면도</li> <li>- 출입구 상세도</li> <li>- 창호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b>본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1.3  | 출입구(문)   |    |    |         |     |                 |     |     |                 |     |
| 평가항목                    | 1.3.4  | 단차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출입구(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출입구(문) 턱의 높이 차이 정도 평가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주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차</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td> <td>3.0</td> </tr> <tr> <td>우 수</td> <td>출입구(문) 단차 2cm이하</td> <td>2.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우 수로 평가함</li> <li>-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li> </ul> |  | 구분 |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 3.0 | 우 수 | 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 2.4 |
| 구분                      |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최우수                     | 출입구(문) 단차 전혀 없음  | 3.0  |    |    |         |     |                 |     |     |                 |     |
| 우 수                     | 출입구(문) 단차 2cm이하  | 2.4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도</li> <li>- 출입구 평면도</li> <li>- 출입구 단면도</li> <li>- 창호 상세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3   | 출입구(문)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3.5   | 전면 유효거리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확보 정도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출입구(문) 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전면 유효거리</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td> <td>2.0</td> </tr> <tr> <td>우수</td> <td>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td> <td>1.6</td> </tr> <tr> <td>일반</td> <td>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td> <td>1.4</td> </tr> </tbody> </table> |  | 구분      | 전면 유효거리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 2.0 | 우수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 1.6 | 일반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 1.4 |
|   | 구분  | 전면 유효거리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8m이상  | 2.0  |         |         |         |     |                        |     |    |                        |     |    |                        |     |
| 우수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5m이상  | 1.6  |         |         |         |     |                        |     |    |                        |     |    |                        |     |
| 일반  |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 1.4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한 유효거리를 지칭함</li> <li>- 출입구(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li> </ul>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도</li> <li>- 출입구 평면도</li> <li>- 출입구 단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3   | 출입구(문)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3.6   | 손잡이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출입구(문)의 손잡이 형태 및 적정 높이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출입구(문)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손잡이</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자동문</td> <td>2.0</td> </tr> <tr> <td>우수</td> <td>손잡이는 0.8m~0.9m에 위치<br/>수평 및 수직막대형</td> <td>1.6</td> </tr> <tr> <td>일반</td> <td>손잡이는 0.8m~0.9m에 위치<br/>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td> <td>1.4</td> </tr> </tbody> </table> |  | 구분      | 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자동문 | 2.0 | 우수 |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br>수평 및 수직막대형 | 1.6 | 일반 |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br>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 1.4 |
|  | 구분  | 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자동문   | 2.0  |         |     |         |     |     |     |    |                                  |     |    |   |     |
| 우수   |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br>수평 및 수직막대형  | 1.6  |         |     |         |     |     |     |    |                                  |     |    |   |     |
| 일반   | 손잡이는 0.8m~0.9m에 위치<br>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 1.4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li> </ul>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도</li> <li>- 출입구 평면도</li> <li>- 출입구 단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3  | 출입구(문)   |
| 평가항목   | 1.3.7  | 경고블록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출입구(문)의 경고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문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블록의 설치 여부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출입구(문)의 경고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경고블록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끼임 방지설비 설치  |
|  | 우 수  |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  | 일 반  | 출입구(문) 0.3m 전후면에 문의 폭만큼 바닥 색상 및 재질의 변화를 통하여 경고 표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문)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문)로 출입이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문)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 부출입구(문)를 주출입구(문)로 대신하여 평가가 가능함</li> <li>- 자동문인 경우에는 자동센서 영역내에 점형블록이 설치되어야 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도</li> <li>- 출입구 평면도</li> <li>- 출입구 단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출입구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평가범주                    | 2.1  | 일반 출입문   |     |
| 평가항목                    | 2.1.1  | 단차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일반 출입문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노인 및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함   |  |     |
| 평가방법                    | 일반 출입문의 단차로 평가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일반 출입문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단차   |     |
|                         | 평가항목 점수  |  |     |
|                         | 최우수  | 모든 문에 단차 전혀 없음   | 3.0 |
|                         | 우 수  |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 2.4 |
|                         | - 일반 출입문에 문턱 등으로 인한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낫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층 평면도</li> <li>- 창호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일반 출입문 종류별 사진 첨부)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2.1   | 일반 출입문   |         |     |         |     |                  |     |    |                  |     |
| 평가항목   | 2.1.2   | 유효폭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용자가 문을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일반 출입문의 통과 가능한 유효폭 평가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일반 출입문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유효폭</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td> <td>3.0</td> </tr> <tr> <td>우수</td> <td>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td> <td>2.4</td> </tr> </tbody> </table>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 3.0 | 우수 |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 2.4 |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최우수   | 모든 문의 유효폭 1.0m이상   | 3.0     |     |         |     |                  |     |    |                  |     |
| 우수   | 모든 문의 유효폭 0.9m이상  | 2.4  |         |     |         |     |                  |     |    |                  |     |
| - 일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쪽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층 평면도</li> <li>- 창호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2.1   | 일반 출입문   |         |         |         |     |                        |     |     |                        |     |     |                        |     |
| 평가항목                    | 2.1.3   | 전·후면 유효거리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문을 여닫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후면 유효거리를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일반 출입문 전·후면 유효거리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전면 유효거리</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이상</td> <td>3.0</td> </tr> <tr> <td>우 수</td> <td>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이상</td> <td>2.4</td> </tr> <tr> <td>일 반</td> <td>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td> <td>2.1</td> </tr> </tbody> </table> |  | 구분      | 전면 유효거리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이상 | 3.0 | 우 수 |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이상 | 2.4 | 일 반 |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 2.1 |
|                         | 구분  | 전면 유효거리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8m이상  | 3.0  |         |         |         |     |                        |     |     |                        |     |     |                        |     |
| 우 수                     |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이상  | 2.4  |         |         |         |     |                        |     |     |                        |     |     |                        |     |
| 일 반                     |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m이상  | 2.1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라 함은 문을 여닫는데 필요한 소요거리를 제외 유효거리를 지칭함</li> <li>- 출입문이 연속된 경우 두 문의 개폐에 필요한 소요거리를 모두 제외한 유효거리로 측정함</li> </ul>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층 평면도</li> <li>- 창호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내부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2.1 일반 출입문  |             |             |         |     |                           |     |    |   |     |
| 평가항목                    |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평가목적                    | 일반출입문의 손잡이 형태 및 설치 높이,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여는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각 실의 용도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             |         |     |                           |     |    |   |     |
| 평가방법                    | 손잡이의 위치 및 형태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출입구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일반 출입구(문)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손잡이 및 점자표지판</th> <th style="width: 20%;">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td> <td>3.0</td> </tr> <tr> <td>우수</td> <td>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b>출입문 옆에</b>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td> <td>2.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장 등 문이 없을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li> <li>-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손잡이에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 것도 출입구 옆 벽면 점자표지판과 동일시 평가함</li> <li>- 미닫이 형태의 문인 경우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거나 그에 유사한 기능의 문 (반자동문 등)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li> </ul> | 구분          |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 3.0 | 우수 |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b>출입문 옆에</b>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 2.4 |
|                         | 구분  |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미닫이문 또는 자동문   | 3.0         |             |         |     |                           |     |    |   |     |
| 우수                      |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 높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에 위치하도록 설치 손잡이의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출입문은 여닫이형태로 <b>출입문 옆에</b>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 2.4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제출서류                    | <b>예비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층 평면도</li> <li>- 창호 상세도(일반 출입문 점자표지판 설치 상세도 포함)</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                           |     |    |   |     |
|                         | <b>본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일반 출입문 종류별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2.2  | 복도   |         |     |         |     |                   |     |     |                   |     |
| 평가항목  | 2.2.1  | 유효폭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복도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복도의 유효폭 정도로 평가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복도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유효폭</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td> <td>3.0</td> </tr> <tr> <td>우 수</td> <td>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td> <td>2.4</td> </tr> </tbody> </table>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 3.0 | 우 수 |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 2.4 |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최우수  | 모든 복도의 유효폭 1.5m이상  | 3.0     |     |         |     |                   |     |     |                   |     |
| 우 수   | 모든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 2.4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도에 고정된 장애물이 있는 경우 장애물 끝에서 반대편 복도 벽까지의 거리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li> <li>- 건물의 전체 복도 중 폭이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복도의 유효폭을 측정함</li> </ul>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층 평면도</li> <li>- 복도 입면도</li> <li>- 복도 단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 첨부)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2.2  | 복도   |         |    |         |     |               |     |     |   |     |     |   |     |
| 평가항목   | 2.2.2  | 단차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복도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복도의 바닥면 단차 정도로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복도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차</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복도에 단차가 전혀 없음</td> <td>3.0</td> </tr> <tr> <td>우 수</td> <td>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td> <td>2.4</td> </tr> <tr> <td>일 반</td> <td>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td> <td>2.1</td> </tr> </tbody> </table> |  | 구분      |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복도에 단차가 전혀 없음 | 3.0 | 우 수 |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 2.4 | 일 반 |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 2.1 |
|  | 구분   |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복도에 단차가 전혀 없음  | 3.0     |    |         |     |               |     |     |   |     |     |   |     |
|  | 우 수  |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 2.4     |    |         |     |               |     |     |   |     |     |   |     |
| 일 반  | 부분적으로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 2.1  |         |    |         |     |               |     |     |   |     |     |   |     |
| - 복도에 여러 부분에서 단차 발생시, 단차 중 그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을 기준으로 복도의 바닥면 단차를 측정함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층 평면도</li> <li>- 복도 입면도</li> <li>- 복도 단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혹은 홀 사진 첨부. 단, 단차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 사진 포함)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2  | 복도  |
| 평가항목                    | 2.2.3  | 바닥 마감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복도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복도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바닥 마감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색상 및 재질 변화로 유도  |
|                         | 일 반  |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
|                         | 평가항목 점수  |   |
|                         |  | 2.0   |
|                         |  | 1.6   |
|                         |  | 1.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의 유도는 복도 벽면의 핸드레일과 바닥 재질 또는 색상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함</li> <li>- 건축물이 한 개의 실로 구성되어 복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 홀 등의 내부 바닥 마감으로 복도의 바닥 마감 항목을 평가함</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층 평면도</li> <li>- 바닥 재질 마감표</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홀 또는 복도 바닥 등의 사진 첨부. 단, 재질이 다를 경우는 해당부분 사진 포함)</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평가범주   | 2.2  | 복도   |     |
| 평가항목   | 2.2.4  | 보행장애물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복도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복도의 설치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부딪히는 위험 없이 복도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     |
| 평가방법   | 복도의 벽면을 따라 보행하기에 부적절한 벽면 돌출물의 제거 여부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복도의 보행장애물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li> </ul>   |  |     |
|  | 구분   | 보행장애물  |     |
|  | 평가항목 점수  |  |     |
|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m에서 0.35m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하고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  | 2.0 |
|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벽면에 부적절한 돌출물 및 총돌 위험이 있는 설치물이 전혀 없고 바닥면에 이동장애물이 전혀 없음  | 1.6 |
| 일반   | 벽면에 돌출물이 있으나 0.1m이내로 설치  | 1.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도의 보행장애물은 높이 2.1m이내에 있는 장애물만 평가함</li> <li>- 건축물 내부에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경우 그 돌출폭이 가장 큰 장애물을 기준으로 측정함</li> </ul>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층 평면도</li> <li>- 복도 입면도</li> <li>- 복도 단면도</li> <li>- 복도 설치물 설치 상세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함)</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복도 사진-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사진 첨부)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평가범주  | 2.2  | 복도   |         |
| 평가항목  | 2.2.5  | 연속손잡이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복도의 연속손잡이를 평가하여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인 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의 주이동 경로상에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복도 양측면에 연속손잡이 설치 및 손잡이 규격 확보 정도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복도의 연속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연속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2.0     |
|   | 우수   |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및 손잡이 끝부분에 점자 표기)   | 1.6     |
|   | 일반   | 연속손잡이 설치(1단 설치)  | 1.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도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연속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li> <li>-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높이가 0.65m 내외에 있어야 동일하게 평가함</li> </ul>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층 평면도</li> <li>- 복도 입면도</li> <li>- 손잡이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3  | 계단  |
| 평가항목   | 2.3.1  | 형태 및 유효폭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팡이가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높이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정도, 난간하부에 추락방지턱 설치 여부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계단의 형태 및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계단 형태 및 유효폭   |
|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이상 확보   |
|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하고, 2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
|  | 일반   |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확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부터 반대편 계단 벽면까지의 폭을 측정하며, 건축물 내 여러 개의 계단이 있는 경우 주계단을 평가대상으로 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층 평면도</li> <li>- 계단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사진 첨부)</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3  | 계단  |
| 평가항목   | 2.3.2  | 철탈면 및 디딤판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계단의 철탈면 및 디딤판을 평가하여 비상시나 시각장애인이 계단으로 이동할 때 일정한 높이의 계단을 딛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와 너비의 철탈면 및 디딤판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계단에 철탈면 및 디딤판 설치와 식별정도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계단의 철탈면 및 디딤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철탈면 및 디딤판   |
|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조명 및 색상을 달리하여 철탈면과 디딤판의 명확한 식별 가능   |
|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1.8m이내마다 휴식참 설치   |
|  | 일반   | 모든 계단에 철탈면 설치<br>철탈면 0.18m이하, 디딤판 0.28m이상, 철탈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이상으로 설치<br>계단코는 3cm미만으로 설치                     |
| - 철탈면을 수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단코의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면 기울기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함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층 평면도</li> <li>- 계단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디딤판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평가범주                    | 2.3  | 계단  |         |
| 평가항목                    | 2.3.3  | 바닥 마감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계단의 마감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계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계단코의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계단의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바닥 마감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계단 전체의 바닥표면이 전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br>발디딤 부분은 촉각 혹은 시각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잘 인지될 수 있는 것을 사용   | 2.0     |
| 우수                      | 계단코에 경질고무류, 줄눈 등의 미끄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 1.6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층 평면도</li> <li>- 계단 상세도(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상세도 포함)</li> </ul>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평가범주  | 2.3   | 계단   |         |
| 평가항목  | 2.3.4   | 손잡이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계단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계단을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계단 양측면 연속된 손잡이의 높이 및 굵기로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계단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감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2.0     |
| 우수  | 연속손잡이 1단 설치<br>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br>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총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 1.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단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굵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li> <li>-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li> <li>-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li> <li>- 어린이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연속손잡이 설치 높이는 0.65m내외에 설치되어야만 최우수로 평가함</li> </ul>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8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층 평면도</li> <li>- 계단 상세도</li> <li>- 계단 손잡이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3  | 계단  |
| 평가항목                    | 2.3.5  | 점형블록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계단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발바닥 촉감으로 계단이 시작되고 끝남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고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계단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점형블록  |
|                         | 최우수  |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                         | 우수   | 계단참을 포함하여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에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
|                         | 평가항목 점수  |   |
|                         |  | 2.0   |
|                         |  | 1.6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8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층 평면도</li> <li>- 계단 상세도</li> <li>- 계단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계단 점형블록 설치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내부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2.4 경사로  |         |     |         |     |                                   |     |    |                                      |     |    |                  |     |
| 평가항목                    | 2.4.1 유효폭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경사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경사로를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
| 평가방법                    | 경사로 유효폭 확보 정도 평가   |         |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경사로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70%;">유효폭</th> <th style="width: 20%;">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이 1.5m이상 확보</td> <td>3.0</td> </tr> <tr> <td>우수</td> <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td> <td>2.4</td> </tr> <tr> <td>일반</td> <td>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td> <td>2.1</td> </tr> </tbody> </table> <p>- 경사로의 유효폭은 추락방지턱으로부터 반대편 벽면까지의 거리로 측정함</p>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이 1.5m이상 확보 | 3.0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 2.4 | 일반 |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 | 2.1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로의 유효폭이 1.5m이상 확보  | 3.0     |     |         |     |                                   |     |    |                                      |     |    |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   | 2.4     |     |         |     |                                   |     |    |                                      |     |    |                  |     |
| 일반                      | 경사로의 유효폭이 1.2m이상   | 2.1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제출서류                    | <b>예비인증</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층 평면도</li> <li>- 경사로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b>본인증</b><br><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평가범주                    | 2.4   | 경사로   |         |
| 평가항목                    | 2.4.2   | 기울기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경사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경사로의 기울기 정도 평가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경사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1/18(5.56%/3.18°)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 3.0     |
| 우수                      | 1/12(8.33%/4.76°)이하로 설치하고, 횡단구배가 없음   | 2.4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로 상세도(단면도 포함)</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평가범주                    | 2.4   | 경사로   |         |
| 평가항목                    | 2.4.3   | 바닥 마감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경사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경사로를 이용하여 층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 정도의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경사로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바닥 마감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은 흡수하고 울림이 적은 재료 사용   | 2.0     |
|                         | 우수  |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사용하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음  | 1.6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로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바닥 사진 첨부)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2.4   | 경사로   |         |            |         |     |  |     |     |  |     |     |   |     |
| 평가항목   | 2.4.4   | 활동공간 및 휴식참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경사로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이동하고 회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활동공간 확보 여부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경사로 활동공간 및 휴식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  |     |     |  |     |     |   |     |
|  | 구분  | 활동공간 및 휴식참  |         |            |         |     |  |     |     |  |     |     |   |     |
|  | 최우수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활동공간 및 휴식참</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td> <td>2.0</td> </tr> <tr> <td>우 수</td> <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td> <td>1.6</td> </tr> <tr> <td>일 반</td> <td>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 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td> <td>1.4</td> </tr> </tbody> </table> | 구분      | 활동공간 및 휴식참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 | 2.0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 1.6 | 일 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 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1.4 |
|  | 구분  | 활동공간 및 휴식참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충격방지용 매트를 부착  | 2.0     |            |         |     |  |     |     |  |     |     |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 1.6   |         |            |         |     |  |     |     |  |     |     |   |     |
| 일 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 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1.4   |         |            |         |     |  |     |     |  |     |     |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측면에 휠체어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 1.6   |         |            |         |     |  |     |     |  |     |     |   |     |
| 일 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0.75m 이내마다 수평면으로 된 1.5m 이상을 휴식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1.4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로의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활동공간을 두는 것은 휴식공간이자 상행과 하행의 휠체어가 교행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하기 위함</li> <li>- 단, 직선형 경사로 참의 폭은 경사로 폭으로 평가 가능함</li> </ul>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로 상세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4  | 경사로  |
| 평가항목  | 2.4.5  | 손잡이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경사로 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약한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손잡이에 지탱하여 경사로를 이동하거나, 시각장애인이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 및 형태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경사로의 양측면 손잡이 높이 및 굽기로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경사로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손잡이  |
|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손잡이 2단 설치  |
|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차갑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 사용  |
|   | 일반   | 연속손잡이 1단 설치<br>색상 및 명도차이가 명확해서 주변으로부터 쉽게 구분 가능<br>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로의 손잡이는 설치 높이 0.8m~0.9m, 굽기 3.2cm~3.8cm 규정에 적합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함</li> <li>-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내외, 아래쪽 손잡이는 0.65m내외로 하여야 함</li> <li>- 손잡이를 설치하더라도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사로 상세도</li> <li>- 경사로 손잡이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경사로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         |     |                          |     |     |                          |     |
| 평가항목                    | 2.5.1   | 전면활동공간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승강기 전면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휠체어사용자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전면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승강기 및 리프트 전면활동공간 확보 정도 평가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승강기의 전면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전면활동공간</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td> <td>2.0</td> </tr> <tr> <td>우 수</td> <td>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td> <td>1.6</td> </tr> </tbody> </table> |  | 구분 | 전면활동공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2.0 | 우 수 |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1.6 |
| 구분                      | 전면활동공간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최우수                     | 전면에 1.5m×1.5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2.0  |    |        |         |     |                          |     |     |                          |     |
| 우 수                     | 전면에 1.4m×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 1.6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 서류                   | 예비 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층 평면도</li> <li>- 승강기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평가항목                    | 2.5.2  | 통과 유효폭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승강기 출입문의 유효통과폭 정도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승강기 통과 유효폭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통과 유효폭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2m이상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과 유효폭 1.0m이상  |
| 일 반                     | 통과 유효폭 0.8m이상,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이하, 되열림장치를 설치   | 평가항목 점수  |
|                         |  | 2.0  |
|                         |  | 1.6  |
|                         |  | 1.4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층 평면도</li> <li>- 승강기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승강기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         |     |                     |     |    |                      |     |
| 평가항목                    | 2.5.3   | 유효바닥면적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승강기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승강기 내부의 적절한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면적 정도 평가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유효바닥면적</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td> <td>2.0</td> </tr> <tr> <td>우수</td> <td>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td> <td>1.6</td> </tr> </tbody> </table> <p>- 다만, 기존 건축물 인증의 경우 구조상의 사유로 승강기 폭 1.1m이상, 깊이 1.35m 이상이며 승강기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거울 등을 부착할 경우 우수로 평가 가능함</p> |  | 구분 | 유효바닥면적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 2.0 | 우수 |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 1.6 |
| 구분                      | 유효바닥면적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최우수                     | 폭 1.6m이상, 깊이 1.4m이상   | 2.0  |    |        |         |     |                     |     |    |                      |     |
| 우수                      |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 1.6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층 평면도</li> <li>- 승강기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평가항목 | 2.5.4 | 이용자 조작설비 |

**■ 세부평가기준**

|      |  |
|------|--|
| 평가목적 |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이용을 위해 조작설비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이용자 조작설비를 적절한 높이에 설치하도록 함 |
|------|--|

|      |                          |
|------|--------------------------|
| 평가방법 | 내·외부 조작설비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승강기의 이용자 조작설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외부 조작설비</li> </ul> |  |
|  | 구분  | 외부 조작설비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성인 및 시각장애이용(1.5m, 점자표시 포함), 어린이 및 휠체어사용자용(0.85m±5cm) 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이 켜짐   |
|  | 일 반   | 설치 높이 0.8m~1.2m, <b>점자표시(고정식)</b> , 조작버튼전면 0.3m전방에 점형블록 설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내부 가로 조작설비</li> </ul>   |  |
|  | 구분  | 가로 조작설비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밀면이 25°정도 들어올려지거나 손잡이에 연결하여 설치된 형태   |
|  | 우 수   |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br>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br><b>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 높이가 0.85m내외로 점자표시(고정식)하고</b> 내부 모서리로부터 최소 0.4m 떨어져서 설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내부 세로 조작설비</li> </ul>   |  |
| 구분   | 세로 조작설비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버튼의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  |  |
| 우 수  | 양각형태의 버튼식을 설치하고,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지고 음성으로 층수를 안내함<br>버튼 크기는 최소 2cm이상으로 함<br>설치 높이가 1.5m의 범위내 설치, <b>점자표시(고정식) 함</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작설비의 버튼을 센서식으로 사용하면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li> <li>- 토글방식의 조작설비를 설치한 경우 두 번째 눌러 취소하는 경우 취소에 대한 음성 안내가 제공되어야 함</li> <li>- 통화장치 등에는 <b>점자표시(고정식)</b>를 하여야 함</li> </ul> |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기 상세도</li> <li>- 승강기 내외부 입면도</li> <li>- 승강기 이용자 조작설비 상세도(승강기 사양서 포함)</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         |     |   |     |     |   |     |
| 평가항목                    | 2.5.5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승강기 도착여부를 알리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를 통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를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승강기 문자안내 및 음성안내장치를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이 승강기의 진행방향, 정지 예정층, 현재의 위치 등에 관한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승강기 및 각 층의 승강장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안내장치 설치 여부로 평가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승강기의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td> <td>2.0</td> </tr> <tr> <td>우 수</td> <td>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td> <td>1.6</td> </tr> </tbody> </table> <p>- 음향신호는 일정한 음을 말하며 음성을 육성으로 층수를 알려주는 것을 말함</p> |   | 구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 2.0 | 우 수 |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 1.6 |
| 구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최우수                     |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성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 2.0   |    |                 |         |     |   |     |     |   |     |
| 우 수                     | 승강장에 승강기 도착여부를 점멸등과 음향으로 안내하고, 승강기의 내부에는 승강기의 운행상황, 도착층을 표시하는 표시등 및 음성으로 안내   | 1.6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기 상세도</li> <li>- 승강기 입면도</li> <li>- 승강기 점멸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계획(승강기 사양서 포함)</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         |     |                                   |     |    |  |     |
| 평가항목                    | 2.5.6   | 수평손잡이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승강기 수평손잡이를 평가하여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연속된 수평손잡이를 잡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에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승강기 내부에 연속된 수평손잡이 설치 여부 평가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승강기의 수평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                                   |     |    |  |     |
|                         | 구분  | 수평손잡이  |    |       |         |     |                                   |     |    |  |     |
|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table border="1"> <tr> <td>구분</td> <td>수평손잡이</td> <td>평가항목 점수</td> </tr>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td> <td>2.0</td> </tr> <tr> <td>우수</td> <td>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td> <td>1.6</td> </tr> </table> | 구분 | 수평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 2.0 | 우수 |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 1.6 |
| 구분                      | 수평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   | 2.0  |    |       |         |     |                                   |     |    |  |     |
| 우수                      |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 1.6  |    |       |         |     |                                   |     |    |  |     |
|                         | 우수  | 수평손잡이가 높이 0.85m±5cm, 지름 3.2cm~3.8cm로 벽과 손잡이 간격 5cm내외로 설치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강기 상세도</li> <li>- 승강기 내부 연손 손잡이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2  | 내부시설  |         |
| 평가범주                    | 2.5  | 승강기   |         |
| 평가항목                    | 2.5.7  | 점자블록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승강기의 점형블록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및 노인 등 시력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승강기 버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승강기 버튼 앞 바닥에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승강기 버튼 앞 바닥의 점형블록 설치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승강기의 점형블록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점형블록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승강기 버튼앞 바닥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2.0     |
|                         | 우수   | 승강기 버튼앞 바닥 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표시 설치  | 1.6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층 평면도</li> <li>- 승강기 상세도</li> <li>- 승강기 경고블록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1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 평가항목   | 3.1.1   |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화장실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에 따른 평가  |  |
| 배 점  | 10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  | 최우수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5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
|  | 우수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설치되고 전체층수의 30%이상 설치(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
|  | 일반  | 최소 1개 이상의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화장실(가족화장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심사단의 가산 평가시 추가 배점함</li> <li>※ 전체층수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층수의 합을 말함</li> <li>※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위생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3.1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         |         |     |   |     |    |   |     |    |  |     |
| 평가항목   | 3.1.2 안내표지판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에게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         |         |     |   |     |    |   |     |    |  |     |
| 평가방법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   |         |         |     |   |     |    |   |     |    |  |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안내표지판</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td> <td>5.0</td> </tr> <tr> <td>우수</td> <td>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td> <td>4.0</td> </tr> <tr> <td>일반</td> <td>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br/>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td> <td>3.5</td> </tr> </tbody> </table> | 구분  | 안내표지판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 5.0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4.0 | 일반 |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br>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 3.5 |
|  | 구분   | 안내표지판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 5.0     |         |     |   |     |    |   |     |    |  |     |
|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점자표지 0.3m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4.0     |         |     |   |     |    |   |     |    |  |     |
| 일반   |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br>점자표지 0.3m 전면에 바닥재질 변화를 통한 경고 표시 설치   | 3.5   |         |         |     |   |     |    |   |     |    |  |     |
|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제출서류   | <b>예비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안내표지판 상세도</li> </ul>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         |     |   |     |    |   |     |    |  |     |
|  | <b>본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2   | 화장실의 접근  |
| 평가항목                    | 3.2.1   | 유효폭 및 단차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이 할 수 있도록 함  |  |
| 평가방법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유효폭</li> </ul>   |  |
|                         | 구분  | 유효폭  |
|                         | 최우수   | 1.5m이상 통로폭 확보  |
|                         | 우 수   | 1.2m이상 통로폭 확보  |
|                         | 일 반   | 0.9m이상 통로폭 확보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단차</li> </ul>   |  |
|                         | 구분  | 단차   |
|                         | 최우수   | 전혀 단차 없음   |
|                         | 우 수   |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
|                         | 일 반   |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평가범주                    | 3.2   | 화장실의 접근  |         |
| 평가항목                    | 3.2.2   | 바닥 마감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화장실 접근로의 바닥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실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바닥 마감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는 타일이나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0.5cm이하인 경우   | 4.0     |
| 우수                      |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타일 혹은 판석마감인 경우로 줄눈이 1cm이하인 경우임   | 3.2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2   | 화장실의 접근   |
| 평가항목                    | 3.2.3   | 출입구(문)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화장실의 출입구(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구(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여부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형태 및 유효폭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
|                         | 일반  | 유효폭 0.9m이상의 여닫이, 미닫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
|                         |   | 평가항목 점수   |
|                         |   | 3.0   |
|                         |   | 2.4   |
|                         |   | 2.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li> <li>-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창호 상세도</li> <li>- 화장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3.3.1   | 칸막이 출입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 및 출입문의 형태로 평가<br>칸막이 사용여부 시각설비 여부와 손잡이 및 잠금장치 형태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유효폭</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유효폭</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유효폭 1.0m이상</td> <td>2.0</td> </tr> <tr> <td>우 수</td> <td>유효폭 0.9m이상</td> <td>1.6</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형태</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형태</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자동문</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td> <td>0.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사용여부 설비</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td> <td>0.8</td> </tr> <tr> <td>일 반</td> <td>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td> <td>0.7</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잠금장치</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잠금장치</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잠금장치를 설치함</td> <td>0.8</td> </tr> </tbody> </table> <p>-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br/>-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폭에서 정척의 내민거리와 문의 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p>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유효폭 1.0m이상 | 2.0 | 우 수 | 유효폭 0.9m이상 | 1.6 | 구분 | 형태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자동문 | 1.0 | 우 수 |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 0.8 | 구분 | 사용여부 설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 1.0 | 우 수 |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 0.8 | 일 반 |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 0.7 | 구분 | 잠금장치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 1.0 | 우 수 | 잠금장치를 설치함 | 0.8 |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우수   | 유효폭 1.0m이상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수   | 유효폭 0.9m이상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형태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우수   | 자동문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수   |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 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사용여부 설비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우수   |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수   |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 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반                     |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 0.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잠금장치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우수                     |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버튼식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 수                     | 잠금장치를 설치함   | 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li> <li>-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 평가항목                              | 3.3.2   | 활동공간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대변기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활동공간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2.0m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 3.0     |
| 우수                                |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 2.7  |         |
|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평가항목  | 3.3.3   | 형태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  |
| 평가방법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로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형태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
|   | 일 반   |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될 경우 우수의 벽걸이형과 동일하게 평가함</li> <li>- 대변기 전면에 활동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벽걸이형으로 설치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 평가항목                    | 3.3.4  | 손잡이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 3.0     |
| 우수                      |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br>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br>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br>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 이상의 길이로 설치<br>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 2.4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평가항목   | 3.3.5   | 기타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기타설비   |
|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 3.0  |
| 우수   |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br>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 및 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 2.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li> <li>-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li> <li>-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li> <li>-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상세도(타입이 다른 경우 타입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4   | 소변기  |
| 평가항목                    | 3.4.1   |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굽기, 설치 높이 평가   |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소변기형태 및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
|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
|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
| 일반                      |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내외로 설치<br>좌우 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br>수직 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br>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 평가항목 점수  |
|                         |   | 6.0  |
|                         |   | 4.8  |
|                         |   | 4.2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변기 상세도</li> <li>- 소변기 손잡이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 평가항목  | 3.5.1   | 형태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세면대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세면대의 형태 평가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세면대 형태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 3.0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 2.4     |
|   | 일 반   |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 2.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li> <li>-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li> </ul>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면대 상세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 평가항목                             | 3.5.2   | 거울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거울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 3.0     |
| 우 수                              |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 2.4  |         |
| - 각도조절이 가능한 거울은 전면거울설치와 동일하게 평가함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         |     |         |     |    |  |     |
| 평가항목                    | 3.5.3   | 수도꼭지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수도꼭지</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광감지식 설치</td> <td>3.0</td> </tr> <tr> <td>우수</td> <td>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td> <td>2.4</td> </tr> </tbody> </table> |  | 구분      | 수도꼭지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광감지식 설치 | 3.0 | 우수 |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 2.4 |
|                         | 구분  | 수도꼭지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최우수                     | 광감지식 설치   | 3.0  |         |      |         |     |         |     |    |  |     |
| 우수                      |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 2.4  |         |      |         |     |         |     |    |  |     |
|                         | - 광감지식일 경우 적당한 수온이므로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한 최우수로 평가함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1   | 구조 및 마감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욕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 평가방법                    | 욕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욕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구조 및 마감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탈의실 등의 바닥면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
| 우수                      | 내부 욕조전면의 휠체어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0.45m로 설치하고, 바닥표면은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음   | 평가항목 점수   |
|                         |   | 3.0   |
|                         |   | 2.4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 평면도</li> </ul>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6   | 욕실   |
| 평가항목                    | 3.6.2   | 기타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욕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 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욕실의 수도꼭지 형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욕조주위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
|                         | 일 반   |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비상용 벨을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설치  |
| -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4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 평면도</li> <li>- 욕실 입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1   | 구조 및 마감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구조 및 마감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안전하게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 평가방법                                       | 샤워실의 구조와 바닥 마감의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샤워실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구조 및 마감  |
|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되 샤워실 입구에 단차없고,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 3.0  |
| 우 수  | 샤워실 입구에 단차 2cm 이하이면서 샤워실 유효바닥면적은 0.9m×0.9m 또는 0.75m×1.3m이상이며,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 2.4  |
| - 바닥타일은 미끄럼방지용 타일로 마감 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에 해당함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샤워실 평면도</li> <li>- 샤워실 단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7   | 샤워실 및 탈의실  |
| 평가항목                    | 3.7.2   | 기타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샤워실의 수도꼭지나 샤워기 등 여러설비를 평가하여 이용이 편리한 위치 및 구조로 설치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수도꼭지와 샤워기 및 비상용 벨 설치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샤워실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수도꼭지 형태 및 비상용 벨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수전을 높낮이 조절형으로 설치, 비상호출벨 설치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샤워실에 수평·수직손잡이를 설치  |
|                         | 일반  | 수도꼭지와 샤워기는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설치   |
|                         |   | 평가항목 점수  |
|                         |   | 3.0  |
|                         |   | 2.4  |
|                         |   | 2.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샤워용 접이식 의자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로 높이로 설치</li> <li>-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1.2m로 설치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li> <li>- 수도꼭지에 냉·온수 점자표시를 설치</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5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샤워실 평면도</li> <li>- 샤워실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4   |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4.1   | 안내설비  |
| 평가항목  | 4.1.1   | 안내판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안내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이 건축물 내부의 위치 및 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축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안내판   |
|   | 최우수   | 우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
|   | 우 수   | 일반 조건을 만족하며 축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
|   | 일 반   | 장애인 등이 쉽게 인지가 가능한 안내판은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설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li> <li>- 점자는 반구형으로 제작되어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li>- 보건복지부 장애인 편의시설 상세표준도</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li> <li>- 축지도식 안내판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4  |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4.1  | 안내설비  |
| 평가항목  | 4.1.2  | 점자블록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로의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자블록을 감지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점자블록의 규격과 재질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점자블록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점자블록 기능이상의 수준인 경우  | 3.0   |
| 우수  |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0.3m)로 하며, 색상은 황색이나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색으로 하며, 재질은 반사되지 않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함   | 2.4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 수준은 사감 즉 청각(음향, 음성), 시각(색상대비 등), 후각(향기 등), 촉각(재질감 등)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의 수준을 의미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4  |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4.1  | 안내설비  |
| 평가항목   | 4.1.3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시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의 음성제공 장치 설치와 접근 및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주출입구까지 시각장애인용 안내설비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
|  | 우 수  |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
|  | 일 반  |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형블록은 위험한 장소의 0.3m전면과, 선형블록이 시작 · 교차 · 굴절되는 지점에 설치되었는지 평가</li> <li>- 선형블록은 주출입구접근로의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되었는지 평가</li> <li>-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내부 안내시설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유도블록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인증심사) 설치할 수 있음</li> <li>- 음성안내장치는 소리 증폭이 실내외 90(dB)이하로(한국정보통신표준) 현장상황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음량 조절해야 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주출입구 까지의 점자블록 설치 계획 포함)</li> <li>- 점자블록 설치 계획도</li> <li>- 음성안내 장치 등 각종 설비 계획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4  |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4.1  | 안내설비  |
| 평가항목   | 4.1.4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건축물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
| 평가방법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안내표시 설치의 적정성 여부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
|  | 일 반  |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각장애인 안내설비는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계단, 접수대, 주요실 등 청각장애인 및 시설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알려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 포함)</li> <li>- 각종 설비 계획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4   |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4.2   | 경보 및 피난설비  |
| 평가항목                    | 4.2.1   | 시각청각장애이용 경보 및 피난 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벨 또는 음성안내 등의 시각경보시스템 및 경광등 또는 문자안내 등의 청각경보시스템이 연속적으로 설치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설비의 연속설치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시·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시각 청각장애이용 경보 및 피난 설비   |
|                         | 평가항목 점수   |  |
|                         | 최우수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으로 비상벨 및 음성 안내 시스템을 연속적으로 설치<br>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과 조명이 포함된 문자안내설비를 연속적으로 설치  |
|                         | 우수  |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br>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경보기(경광등)는 남·여 화장실내부(장애인화장실 포함), 탈의실(샤워실에서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li> <li>-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청각장애인인 경우 모든 실에 시각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li> <li>-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li> </ul>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8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층별 경보 및 피난 계획</li> <li>-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 평가항목                    | 5.1.1   | 설치율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숙박시설 등의 해당시설에는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하도록 객실·침실 등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전체 침실 또는 객실 중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객실의 확보정도 평가   |  |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설치율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2%이상 <b>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4%이상 설치)</b>   | 5.0     |
|                         | 우수  |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이상 <b>설치(관광숙박시설의 경우 3%이상 설치)</b>   | 4.0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 개요도 (전체객실수와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 가능한 침실 및 객실수 표시)</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평가항목                    | 5.1.2   | 설치위치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식당, 로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의 위치가 공용공간에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공용공간으로 단차가 없이 접근이 가능한지를 평가함   |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설치위치   |
|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주출입층에 설치되어 공용공간으로 단차없이 접근가능함  | 5.0  |
| 우 수                     | 주출입층에 설치되지 않았으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용공간으로 이동이 용이함   | 4.0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이 있는 층)</li> <li>- 평면도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이 있는 층)</li> <li>- 1층 평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평가항목                    | 5.1.3   | 통과유효폭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출입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정도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통과 유효폭   |
|                         | 최우수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1m이상 확보  |
|                         | 우수  | 객실 및 침실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확보  |
|                         | 평가항목 점수   |  |
|                         |   | 3.0  |
|                         |   | 2.4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 평가항목                    | 5.1.4   | 활동공간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 유효바닥면적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내부에서 회전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의 확보정도 평가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 및 침실 내부 활동공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활동공간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 3.0     |
|                         | 우 수   | 객실 및 침실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2m 이상 활동공간 확보  | 2.4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 평가항목                    | 5.1.5   | 침대구조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침대구조를 확보함  |  |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 내부 침대구조의 확보정도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침대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침대구조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4m 이상 확보하며, 보조손잡이 설치   | 2.0     |
|                         | 우 수   | 객실 침대 모두가 높이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 1.6     |
|                         | 일 반   |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0.4~0.45m이고, 측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   | 1.4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
| 평가항목                    | 5.1.6   | 객실바닥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의 바닥 마감정도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는 정도에 따른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 및 침실 내부 객실바닥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객실 및 침실 바닥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펫 등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 재료로 마감  |
|                         | 우 수   | 바닥면에 높이차이를 두지 않으며, 표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
|                         |   | 평가항목 점수  |
|                         |   | 2.0  |
|                         |   | 1.6  |
|                         | - 카펫은 목발 등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길게 설치되지 않도록 함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 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화장실)  |
| 평가항목                    | 5.1.7   | 유효폭 및 단차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 출입문 통과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정도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출입문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 화장실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객실 화장실 유효폭   |
|                         | 최우수   | 출입문 통과 유효폭 1m이상, 출입문 단차 없음   |
|                         | 우수  |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출입문 단차 없음   |
|                         | 일반  |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출입문 단차 2cm이하  |
|                         | 평가항목 점수   |  |
|                         |   | 3.0  |
|                         |   | 2.4  |
|                         |   | 2.1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화장실)  |
| 평가항목                    | 5.1.8   | 유효 바닥면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의 화장실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화장실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 화장실 유효 바닥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객실 및 침실 바닥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2.0m 이상, 깊이2.1m이상이 되도록 설치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상 확보   |
|                         | 일반  | 대변기 유효 바닥면적이 폭1.6m이상, 깊이2.0m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
| 평가항목 점수                 |   |  |
|                         | 3.0   |  |
|                         | 2.7   |  |
|                         | 2.1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화장실)   |         |            |         |     |  |     |     |  |     |
| 평가항목                    | 5.1.9  | 손잡이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화장실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화장실 손잡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  |     |     |  |     |
|                         | 구분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객실 및 침실 바닥</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td> <td>2.0</td> </tr> <tr> <td>우 수</td> <td>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br/>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br/>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br/>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br/>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td> <td>1.6</td> </tr> </tbody> </table> | 구분      | 객실 및 침실 바닥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 2.0 | 우 수 |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br>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br>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br>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br>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 1.6 |
|                         | 구분   | 객실 및 침실 바닥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 2.0   |         |            |         |     |  |     |     |  |     |
| 우 수                     |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br>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br>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br>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br>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 1.6   |         |            |         |     |  |     |     |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단위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li> <li>- 객실 화장실 입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 평가항목                    | 5.1.10  | 점자표지판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객실 및 침실의 위치 및 호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부착 여부로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 및 침실의 점자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점자표지판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 점형 블록 설치   |
|                         | 우수  | 출입문 옆 벽면에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점자표지판 부착   |
|                         | - 복도 손잡이가 설치된 경우에는 우수로 평가함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문 상세도 (점자표지판 위치 표시)</li> <li>- 창호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 평가항목                    | 5.1.11  | 설치높이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높이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
| 평가방법                    | 객실 및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높이로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설치높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설치높이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수납방식을 상·하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으로 설치  |
|                         | 우수  |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1.2m 이하로 설치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 상세도(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 평가범주                    | 5.1   | 객실 및 침실 (기타설비)  |         |
| 평가항목                    | 5.1.12  | 초인등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객실 및 침실 내부에 초인등 설치여부를 평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 설치되어야 함  |   |         |
| 평가방법                    |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 초인등 설치 여부로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객실 및 침실 초인등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설치높이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청각장애인 경보설비 설치   | 2.0     |
|                         | 우 수   | 객실 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등과 함께 청각장애인 초인등 설치  | 1.6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평면도 (휠체어사용자 등이 이용가능한 침실 및 객실)</li> <li>- 청각장애인 경보 및 피난 설비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2   | 관람석 및 열람석  |
| 평가항목                    | 5.2.1   | 설치율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율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일정비율이상 좌석의 확보정도 평가  |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좌석의 설치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설치율  |
|                         | 최우수   |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2%이상 설치  |
|                         | 우 수   |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의 1%이상 설치  |
|                         | 평가항목 점수   |  |
|                         |   | 4.0  |
|                         |   | 3.2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요도 (전체 관람석 및 열람석과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좌석수 표시)</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2   | 관람석 및 열람석  |
| 평가항목                    | 5.2.2   | 설치위치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는지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에 위치를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좌석의 설치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설치위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2곳 이상 분산배치를 하여야함   |
|                         | 우 수   | 좌석 위치가 출입구 및 피난통로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
|                         |   | 평가항목 점수  |
|                         |   | 3.0  |
|                         |   | 2.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활동보조인 등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동반하는 이용자를 고려하여 좌석을 함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함</li> <li>-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함</li> <li>-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석 좌석배치 계획</li> <li>-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li> <li>- 각 층별 경보 및 피난계획</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범주                    | 5.2  | 관람석 및 열람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5.2.3  |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관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br>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무대 및 강단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 점                     | 4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관람석 및 무대(혹은 강단)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li> <li>• 세부항목 - 관람석</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관람석의 구조</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td> <td>2.0</td> </tr> <tr> <td>우수</td> <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td> <td>1.6</td> </tr> <tr> <td>일반</td> <td>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길이 1.3m이상</td> <td>1.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비장애인 동행인과 함께 앉을 수 있는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li> <li>-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함</li> <li>-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함</li> <li>• 세부항목 - 무대(혹은 강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무대의 구조</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td> <td>2.0</td> </tr> <tr> <td>우수</td> <td>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td> <td>1.6</td> </tr> <tr> <td>일반</td> <td>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br/>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td> <td>1.4</td> </tr> </tbody> </table> |   | 구분      | 관람석의 구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 2.0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 | 1.6 | 일반 |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길이 1.3m이상 | 1.4 | 구분 | 무대의 구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 2.0 | 우수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 1.6 | 일반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br>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4 |
|                         | 구분   | 관람석의 구조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FM수신기 또는 자기루프시스템 등 집단보청장치 설치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1.2m이상의 통로와 구분하여 좌석설치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 관람석의 구조는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0.9m이상, 길이 1.3m이상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무대의 구조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최우수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없이 접근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수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  | 1.6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반                      | 무대(혹은 강단)에 단차가 있는 경우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8.33%/4.76°)이하의 고정형 경사로를 설치<br>다만, 구조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석 상세도 (세부치수기입)</li> <li>- 집단보청장치 설치 계획 (사양서 포함, 해당시설에 한함)</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2   | 관람석 및 열람석  |
| 평가항목                    | 5.2.4   | 열람석의 구조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열람석의 구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등의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이 쉽도록 좌석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열람석의 구조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열람석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열람석의 구조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 조절형 열람석 설치  |
|                         | 우 수   |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m~0.9m, 하부공간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
| 평가항목 점수                 | 2.0   |  |
| 평가항목 점수                 | 1.6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0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석 상세도</li> <li>- 평면도 (좌석 위치가 표시된 도면)</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3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 평가항목                    | 5.3.1   | 설치 위치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접수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문 가까운 곳에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접근 통로의 단차와 지지난간 설치 여부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위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설치 위치  |
|                         | 최우수   | 접수대는 출입문 옆 혹은 전면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 없음   |
| 우수                      | 접수대는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치, 접근로상 단차가 없으며 안내표시가 되어 있어야함  | 평가항목 점수  |
|                         |   | 2.0  |
|                         |   | 1.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li> <li>- 안내데스크의 위치가 출입구옆 혹은 전면에 설치되지 않아 안내데스크 위치표시가 인지할 수 있게 설치되었으면 우수로 평가함</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li> <li>- 접수대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3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
| 평가항목   | 5.3.2   |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하부공간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접수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높이 및 하부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높이와 하부공간 확보 정도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의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
|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높이가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형태나 서서 이용하는 사용자 및 휠체어사용자를 고려한 접수대 등을 모두 설치  | 3.0  |
| 우수   | 높이 0.8m~0.9m, 하부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공간 확보   | 2.4  |
| -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관리실 등)을 평가대상으로 함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접수대 위치표기)</li> <li>- 접수대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4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평가항목                    | 5.4.1   |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매표소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 평가방법                    | 매표소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매표소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매표소의 구조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
|                         | 우수  | 매표소의 높이는 0.7m~0.9m로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확보   |
| 평가항목 점수                 |   |  |
|                         | 2.0   |  |
|                         | 1.6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매표소 위치표기)</li> <li>- 매표소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4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평가항목                    | 5.4.2   |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판매기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 평가방법                    | 판매기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판매기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판매기의 구조  |
|                         | 최우수   | <p>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p>           |
| 평가항목 점수                 | 2.0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판매기 위치표기)</li> <li>- 판매기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평가범주                    | 5.4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평가항목                    | 5.4.3   |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음료대로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 평가방법                    | 음료대의 적정구조 설치 여부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음료대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음료대의 구조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의 0.3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함  |
|                         | 우수  |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0.7m~0.8m로 하며,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
|                         | 평가항목 점수   | 2.0   |
|                         |   | 1.6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음료대 위치표기)</li> <li>- 음료대 상세도</li> </ul>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평가부문                    | 5 기타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5.5 피난구 설치   |                              |         |         |     |                              |     |     |                         |     |
| 평가항목                    |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평가목적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     |
| 평가방법                    | 피난방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피난구의 위치가 위급상황 시 접근이 가능한 곳에 설치되었는지, 피난구까지 연속적으로 안내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함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피난구의 설치위치 등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피난방법</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피난방법</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td> <td>0.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난훈련은 관련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계획에 한함</li> <li>-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석이 있는 경우 비상시 장애인 이용자 대피에 대한 책임제 구성(최우수 등급에 한함)</li> </ul> | 구분                           | 피난방법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 | 1.0 | 우 수 |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 | 0.8 |
|                         | 구분   | 피난방법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최우수  | 우수조건을 만족하고 피난훈련시행을 위한 매뉴얼 구비 | 1.0     |         |     |                              |     |     |                         |     |
|                         | 우 수  | 정기적인 피난 훈련에 대한 시행 계획 구비      | 0.8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피난구의 위치</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피난구의 위치</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td> <td>0.8</td> </tr> </tbody> </table>   | 구분                           | 피난구의 위치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      | 1.0 | 우 수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0.8 |
|                         | 구분   | 피난구의 위치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최우수  |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      | 1.0     |         |     |                              |     |     |                         |     |
|                         | 우 수  | 공용공간에 피난구 설치                 | 0.8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피난구까지의 안내시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피난 안내시설</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td> <td>0.8</td> </tr> </tbody> </table>  | 구분                           | 피난 안내시설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 1.0 | 우 수 | 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        | 0.8 |
|                         | 구분   | 피난 안내시설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최우수                     | 연기 등에도 확인이 가능한 안내시설 설치   | 1.0                          |         |         |     |                              |     |     |                         |     |
| 우 수                     | 피난구까지 안내시설 연속 설치   | 0.8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 피난, 소방관련 도면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5 기타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5.5 피난구 설치   |  |          |         |     |  |     |    |  |     |    |  |     |
| 평가항목   | 5.5.2 피난의 구조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시설 이용자의 다수가 보행 및 시각장애인경우와 노인 등으로 구성된 시설은 비상시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피난구를 이용하여 건물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     |    |  |     |
| 평가방법   | 피난구의 구조 평가   |  |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피난구의 구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피난 시설의 구조</li> </ul>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피난 시설 구조</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 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임</td> <td>3.0</td> </tr> <tr> <td>우수</td> <td>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td> <td>2.4</td> </tr> <tr> <td>일반</td> <td>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td> <td>2.1</td> </tr> </tbody> </table> | 구분   | 피난 시설 구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 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임 | 3.0 | 우수 |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 2.4 | 일반 |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 2.1 |
|  | 구분   | 피난 시설 구조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 기준을 만족하며 모든 층의 피난이 직접 지상 까지 피난이 가능한 구조임   | 3.0      |         |     |  |     |    |  |     |    |  |     |
|  | 우수   |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주요실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 2.4      |         |     |  |     |    |  |     |    |  |     |
| 일반   | 피난층을 제외한 층 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실이 있는 해당 층에는 층별로 외부 피난이 가능한 옥외 공간이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 있음   | 2.1  |          |         |     |  |     |    |  |     |    |  |     |
| - 단, 기존시설인 경우에는 피난 공간이 반드시 외부에 설치되지 않더라도 즉각적으로 소방차 등의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일반수준인 것으로 봄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 피난, 소방관련 도면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5 기타시설   |  |         |         |          |               |     |   |               |     |   |     |
| 평가범주   | 5.6 임산부 휴게시설   |  |         |         |          |               |     |   |               |     |   |     |
| 평가항목   |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 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     |   |     |
| 평가방법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임산부 휴게시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유효폭</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유효폭</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1.5m이상 통로폭 확보</td> <td>1.0</td> </tr> <tr> <td>우수</td> <td>1.2m이상 통로폭 확보</td> <td>0.8</td> </tr> </tbody> </table>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1.5m이상 통로폭 확보 | 1.0 | 우수  | 1.2m이상 통로폭 확보 | 0.8 |   |     |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최우수  | 1.5m이상 통로폭 확보  | 1.0     |         |          |               |     |   |               |     |   |     |
|  | 우수   | 1.2m이상 통로폭 확보  | 0.8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단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차</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전혀 단차 없음</td> <td>1.0</td> </tr> <tr> <td>우수</td> <td>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td> <td>0.8</td> </tr> <tr> <td>일반</td> <td>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td> <td>0.7</td> </tr> </tbody> </table> | 구분   |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전혀 단차 없음 | 1.0           | 우수  |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 0.8           | 일반  |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 0.7 |
| 구분   |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최우수  | 전혀 단차 없음   | 1.0  |         |         |          |               |     |   |               |     |   |     |
| 우수   |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 0.8  |         |         |          |               |     |   |               |     |   |     |
| 일반   |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 0.7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9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부 휴게실 설치층 평면도 (접근복도 혹은 통로 세부치수기입)</li> <li>- 임산부 휴게실 설치부분 단면도 (접근복도 혹은 통로 레벨표시 및 세부치수기입)</li> </ul> |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li> </ul>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평가부문                    | 5   | 기타시설   |         |
| 평가범주                    | 5.6   | 임산부 휴게시설   |         |
| 평가항목                    | 5.6.2   | 내부 구조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임산부 휴게시설의 내부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설비와 휠체어사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임산부 휴게시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설비 설치여부와 휠체어사용자의 이용 가능여부로 평가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휴게시설 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에 편리하도록 전기 콘센트와 포트 등을 설치   | 3.0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수유할 수 있는 공간에는 의자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의자 주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전면 혹은 측면에 활동공간이 1.4m×1.4m이상 확보 | 2.4     |
|                         | 일반  | 휴게시설 내부 공간에 수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인 기저귀교환대와 세면대를 설치              | 2.1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 임산부 휴게공간 상세도 (내부 공간 및 설치물간의 거리 등 세부치수기입)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6 기타설비   |  |             |         |     |  |     |    |   |     |    |  |     |
| 평가범주                    | 6.1 비치용품   |  |             |         |     |  |     |    |   |     |    |  |     |
| 평가항목                    |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공중이용시설에서 휠체어사용자나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휠체어 등을 비치하도록 하여 시설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         |     |  |     |    |   |     |    |  |     |
| 평가방법                    | 해당시설에 비치하여야 하는 각종 비치용품에 대해 비치여부를 평가  |  |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휴게시설내 활동공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부설비 및 활동공간</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td> <td>3.0</td> </tr> <tr> <td>우수</td> <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td> <td>2.4</td> </tr> <tr> <td>일반</td> <td>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td> <td>2.1</td> </tr> </tbody> </table> | 구분   |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3.0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 2.4 | 일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 2.1 |
|                         | 구분   | 내부설비 및 활동공간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통신중계서비스 등 수화통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 | 3.0         |         |     |  |     |    |   |     |    |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성계산기 저시력용 독서기 등 권장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 2.4  |             |         |     |  |     |    |   |     |    |  |     |
| 일반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보청기기, 휠체어 등 의무 비치용품을 해당시설별 비치용품 규정(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관련 별표3)에 맞추어 비치   | 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 비치용품 리스트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해당부분 사진 첨부)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건축물  |   |         |         |         |          |                      |  |
|-------------------------|---|---------|---------|---------|----------|----------------------|--|
| 평가부문                    | 7 종합평가  |         |         |         |          |                      |  |
| 평가범주                    |   |         |         |         |          |                      |  |
| 평가항목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평가목적                    |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         |          |                      |  |
| 평가방법                    |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         |         |         |          |                      |  |
| 배 점                     |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편의시설 평가</th> <th style="width: 25%;">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등급 구분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편의시설 평가 | 평가항목 점수 | 등급 구분 없음 |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
|                         | 구분  | 편의시설 평가 | 평가항목 점수 |         |          |                      |  |
| 등급 구분 없음                |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 화장실 설치</li> <li>-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등 설치</li> <li>· 안내표시가 경로르 따라 찾기 쉽게 설치 등</li> </ul> </li> </ul> </li> </ul>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 해당없음  |         |         |          |                      |  |
|                         | 본인증   | - 해당없음  |         |         |          |                      |  |

## 0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공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일부개정.]  
[별표3]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별표3] 공원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

| 범주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 1<br>매개<br>시설 | 1.1<br>접근로                                   | 1.1.1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에서 보차가 분리된 안전보행로의 확보 평가                                 | P1-01-01 | 1 |
|               |  | 1.1.2 유효폭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 할 수 있는 보행로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 확보 평가                                 | P1-01-02 | 2 |
|               |  | 1.1.3 단차              | 공원까지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평가   | P1-01-03 | 1 |
|               |  | 1.1.4 기울기             | 접근로의 진행방향 및 좌우기울기 평가  | P1-01-04 | 2 |
|               |  | 1.1.5 바닥마감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 평가   | P1-01-05 | 1 |
|               |  | 1.1.6 보행장애물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의 연속성 확보와 차도와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평가  | P1-01-06 | 2 |
|               |  | 1.1.7 덮개              |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 설치 평가                        | P1-01-07 | 1 |
|               | 1.2<br>장애<br>인<br>전<br>용<br>주<br>차<br>구<br>역 |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공원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 근접 설치 평가                 | P1-02-01 | 1 |
|               |  | 1.2.2 주차면수 확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평가   | P1-02-02 | 1 |
|               |  | 1.2.3 주차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규정에 적합 정도 평가   | P1-02-03 | 1 |
|               |  | 1.2.4 보행 안전통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공원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안전통행로의 폭 및 연속성 평가            | P1-02-04 | 1 |
|               |  | 1.2.5 안내 및 유도표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평가              | P1-02-05 | 1 |
|               | 1.3<br>출입구                                   | 1.3.1 진출입 통제 계획       | 공원 <b>출입구</b> 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및 휠체어사용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등의 설치 평가 | P1-03-01 | 5 |
|               |  | 1.3.2 공원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 공원의 <b>출입구</b> 와 보행로의 경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가능한지 평가                     | P1-03-02 | 1 |

| 범주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2<br>유도<br>및<br>안내<br>시설 | 2.1<br>안<br>내<br>설<br>비  | 2.1.1 안내판설치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안내판 설치 평가   | P2-01-01 | 2  |
|                          |  | 2.1.2 안내판의 정보     | 안내판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혹은 BF산책로의 정보 제공 유무 및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     | P2-01-02 | 2  |
|                          |  | 2.1.3 통합안내 설비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주출입구부터 주요시설까지 시각장애인용 유도용시설(점자블록 등)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와 적절성 평가 | P2-01-03 | 2  |
|                          |  | 2.1.4 경고시설        | 위험지역에 적절한 경고시설의 설치 평가  | P2-01-04 | 1  |
| 3<br>위생<br>시설            | 3.1<br>장<br>애<br>인<br>등<br>이<br>이<br>용<br>가<br>능<br>한<br>화<br>장<br>실 |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평가   | P3-01-01 | 5  |
|                          |  | 3.1.2 안내표지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평가   | P3-01-02 | 2  |
|                          | 3.2<br>화<br>장<br>실<br>접<br>근   | 3.2.1 유효폭 및 단차    | 화장실로 접근하는 하기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  | P3-02-01 | 3  |
|                          |  | 3.2.2 바닥 마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러지는 정도 평가   | P3-02-02 | 2  |
|                          |  | 3.2.3 출입구(문)      |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휠체어 접근 가능 정도와 화장실 입구에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 평가                                   | P3-02-03 | 3  |
|                          | 3.3<br>대<br>변<br>기   | 3.3.1 칸막이 출입문     | 칸막이의 출입문 유효폭의 휠체어의 접근 가능 평가  | P3-03-01 | 2  |
|                          |  |                   |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출입문 형태 평가  |          |    |
|                          |  |                   | 칸막이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설비 설치 정도 평가   |          |    |
|                          |  |                   |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손잡이 및 잠금장치 설치 정도 평가  |          |    |



| 범주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          |
|-----|-----------|---------------|---------------------------------|--|--|----------|-----------------------------|---------------------------------------|----------|
|     | 3.3       | 3.3.2 활동공간    |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 평가            | P3-03-02                                       | 2  |          |                             |                                       |          |
|     |           | 3.3.3 형태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 P3-03-03                                       | 2  |          |                             |                                       |          |
|     |           | 3.3.4 손잡이     |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 평가 | P3-03-04                                       | 2  |          |                             |                                       |          |
|     |           | 3.3.5 기타설비    |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 P3-03-05                                       | 2  |          |                             |                                       |          |
|     | 3.4       | 3.4 소변기       | 3.4.1 형태 및 손잡이                  |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굵기, 설치 높이 평가                | P3-04-01   | 2        |                             |                                       |          |
|     | 3.5       | 3.5 세면대       | 3.5.1 형태                        | 세면대의 형태 평가                                     | P3-05-01   | 1        |                             |                                       |          |
|     |           |               | 3.5.2 거울                        |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평가                       | P3-05-02   | 1        |                             |                                       |          |
|     |           |               | 3.5.3 수도꼭지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P3-05-03   | 1        |                             |                                       |          |
|     | 4         | 4.1 편의 시설     | 4.1 접근 및 이용성                    | 4.1.1 시설까지의 접근로                                | 공원 내 시설의 접근하기 쉬운 위치 평가                                       | P4-01-01 | 1                           |                                       |          |
|     |           |               |                                 | 4.1.2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 공원 시설의 주출입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입 가능 한지 정도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와 기울기 평가 | P4-01-02 | 2                           |                                       |          |
| 4.2 |           | 4.2 공원 시설     | 4.2.1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단 혹은 놀이 공간 등의 공원 시설 설치 평가     | P4-02-01   | 8        |                             |                                       |          |
| 4.3 |           | 4.3 기타 설비     | 4.3.1 휴식공간                      | 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위치에 휴식공간 설치 평가                   | P4-03-01   | 1        |                             |                                       |          |
|     |           |               | 4.3.2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평가          | P4-03-02   | 2        |                             |                                       |          |
| 5   |           | 5.1 BF보행의 연속성 | 5.1.1 BF보행로의 지정                 | 내부 산책로 중 출입구-공원시설 간을 연결하는 주요보행로를 BF보행로로의 지정 평가 | P5-01-01   | 2        |                             |                                       |          |
|     |           |               |                                 |  |  |          | 5.1.2 보행안전 공간               | 내부 보행로에서 수직 수평의 3차원적인 무장애 보행공간의 확보 평가 | P5-01-02 |
|     | 5.1.3 단차  |               |                                 |  |  |          | 공원 내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평가   | P5-01-03                              | 1        |
|     | 5.1.4 기울기 |               |                                 |  |  |          | 보행로 등의 진행 방향 및 좌우기울기의 경사 평가 | P5-01-04                              | 5        |

| 범주      |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분류번호     | 배점  |
|---------|--|-------------------|---|----------|-----|
|         |  | 5.1.5 바닥 마감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평가 | P5-01-05 | 2   |
|         |  | 5.1.6 자전거 도로와의 접점 | 자전거와의 접점 없이 연속적인 안전보행로의 확보 평가             | P5-01-06 | 2   |
|         |  | 5.1.7 보행유도의 연속성   |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평가    | P5-01-07 | 10  |
| 6. 종합평가 |  |                   |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 P6-01-01 |     |
| 총 지표수   |  | 44                | 총 배 점                                     |          | 100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1.1  |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모든 이용자가 보도에서 공원의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에서 보차가 분리된 안전보행로가 확보되었는지에 대해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로 평가</li> </ul>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td> <td>1.0</td> </tr> <tr> <td>우수</td> <td>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td> <td>0.8</td> </tr> <tr> <td>일반</td> <td>보차혼용 접근로</td> <td>0.7</td> </tr> </tbody> </table> | 구분      |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 1.0 | 우수 |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 0.8 | 일반 | 보차혼용 접근로 | 0.7 |
|                         | 구분   |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  | 1.0     |                |         |     |                 |     |    |                         |     |    |          |     |
|                         | 우수   |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 0.8     |                |         |     |                 |     |    |                         |     |    |          |     |
| 일반                      | 보차혼용 접근로   | 0.7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접근로라 함은 계획 단계부터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여, 보행자가 공원입구까지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진입하는 것을 말함</li> <li>- 공원 입구까지의 보행로에 있어 차량과의 간섭에 의한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 최우수로 보며, 차량과의 간섭부분이 생길 지라도 보행자 우선의 점점계획이 있을 경우 최우수로 봄</li> <li>-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주출입구가 보도에서 직접 연결된 경우 대지 내에서 주출입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최우수로 평가하며, 보도의 공간을 활용하여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등으로 인해 주출입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우수로 평가함</li> </u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차량 및 보행자 동선 계획</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1.2  | 유효폭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유효폭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로 또는 접근로의 적정 유효폭 확보 여부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유효폭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접근로의 유효폭</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td> <td>2.0</td> </tr> <tr> <td>우수</td> <td>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td> <td>1.6</td> </tr> <tr> <td>일반</td> <td>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td> <td>1.4</td> </tr> </tbody> </table> |   | 구분      | 접근로의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 2.0 | 우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 1.6 | 일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 1.4 |
|                         | 구분   | 접근로의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최우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8m이상  | 2.0   |         |          |         |     |                       |     |    |                       |     |    |                       |     |
| 우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5m이상  | 1.6   |         |          |         |     |                       |     |    |                       |     |    |                       |     |
| 일반                      |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m이상  | 1.4   |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로의 유효폭은 대지내의 접근로 전체 유효폭 중 가장 좁은 부분을 기준으로 측정함</li> <li>-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li> </ul>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 평가항목                    | 1.1.3   | 단차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단차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고,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사용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단차를 두지 않도록 함   |   |     |
| 평가방법                    | 공원 주출입구까지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진행방향상의 단차 평가   |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접근로의 단차   |     |
|                         | 평가항목 점수   |   |     |
|                         | 최우수   | 전체구간에 단차 없음   | 1.0 |
|                         | 우수  | 전체구간에 단차 2cm이하  | 0.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접근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li> <li>-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         |     |   |     |     |  |     |
| 평가항목  | 1.1.4  | 기울기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기울기를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노인이나 임산부 등 다양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접근로의 진행방향 및 좌우기울기의 정도 평가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   |     |     |  |     |
|   | 구분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 정도</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50(2%/1.15°)이하<br/>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24(4.17%/2.39°)이하</td> <td>2.0</td> </tr> <tr> <td>우 수</td> <td>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24(4.17%/2.39°)이하<br/>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5.56%/3.18°)이하</td> <td>1.6</td> </tr> </tbody> </table> | 구분      |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 정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50(2%/1.15°)이하<br>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24(4.17%/2.39°)이하 | 2.0 | 우 수 |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24(4.17%/2.39°)이하<br>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5.56%/3.18°)이하 | 1.6 |
|   | 구분   | 접근로의 진행방향 기울기 정도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최우수   |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50(2%/1.15°)이하<br>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24(4.17%/2.39°)이하  | 2.0  |         |                  |         |     |   |     |     |  |     |
| 우 수   | 접근로 전체구간 좌우기울기 1/24(4.17%/2.39°)이하<br>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5.56%/3.18°)이하   | 1.6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접근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li> <li>-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li> </ul>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1.5  | 바닥 마감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마감 정도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이음새 그리고 마감정도의 평탄한 정도에 따른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바닥 마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바닥 재질 마감</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감</td> <td>1.0</td> </tr> <tr> <td>우수</td> <td>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로 함</td> <td>0.8</td> </tr> <tr> <td>일반</td> <td>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로 함(보도블록 등)</td> <td>0.7</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li> <li>-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li> </ul> |   | 구분      | 바닥 재질 마감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감 | 1.0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로 함 | 0.8 | 일반 | 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로 함(보도블록 등) | 0.7 |
|                         | 구분   | 바닥 재질 마감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감   | 1.0     |          |         |     |                                 |     |    |                                    |     |    |   |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0.5cm이하로 함  | 0.8     |          |         |     |                                 |     |    |                                    |     |    |   |     |
| 일반                      | 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으며, 걸려 넘어질 염려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며 줄눈이 있는 경우 1cm이하로 함(보도블록 등)  | 0.7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         |     |                              |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1.6  | 보행장애물   |         |       |         |     |                              |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차량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한 위험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       |         |     |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이 제거되어 보행안전 통로로서 연속성이 확보되고,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의 설치 정도로 평가   |   |         |       |         |     |                              |     |     |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보행장애물 및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보행장애물</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보행장애물</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명확하게 장애물 구역이 설치</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가로등, 가로수 등이 보행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치</td> <td>0.8</td> </tr> </tbody> </table> <p>- 장애물 구역은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보도의 각종설치물의 설치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접근로와 차도의 경계</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td> <td>0.8</td> </tr> </tbody> </table> <p>- 접근로와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차량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는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분리 항목은 최우수로 평가함</p> |   | 구분      | 보행장애물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명확하게 장애물 구역이 설치 | 1.0 | 우 수 | 가로등, 가로수 등이 보행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치 | 0.8 | 구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 | 1.0 | 우 수 |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 0.8 |
|                         | 구분   | 보행장애물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명확하게 장애물 구역이 설치  | 1.0     |       |         |     |                              |     |     |                                  |     |    |             |         |     |                       |     |     |                                    |     |
|                         | 우 수  | 가로등, 가로수 등이 보행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도록 설치  | 0.8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     |                                    |     |
| 최우수                     | 차도와 구분되는 울타리 등 공작물 설치  | 1.0   |         |       |         |     |                              |     |     |                                  |     |    |             |         |     |                       |     |     |                                    |     |
| 우 수                     | 보행통로와 차도에 경계석이 설치되고, 재질과 색상 모두 구분됨   | 0.8   |         |       |         |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li>- 접근보행로 상에 보행지원시설 및 설치물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     |                              |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1  | 접근로  |
| 평가항목   | 1.1.7  | 덮개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를 평가하여 배수로 덮개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 이나 배수로 격자구멍 또는 틈새에 발생하는 위험 요소들이 없이 주출입구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 표면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없는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평가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접근로의 배수로 덮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배수로 덮개   |
|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높이차 전혀 없으며, 구멍이 없는 덮개를 사용  | 1.0  |
| 우수   | 높이차 전혀 없으며, 격자구멍(틈새)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 0.8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로 상에 배수로 등과 같은 빠질 위험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덮개 설치가 불필요한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li> <li>- 공원이 대지선에 인접하여 있어 보도로부터 직접 주출입구가 연결된 경우 확보된 대지내의 주출입구 활동공간 또는 주출입구 전면 보도의 공간을 평가 대상으로 봄</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차량 출입 및 보행 출입구 표시)</li> <li>- 접근보행로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li>- 배수로 덮개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항목   | 1.2.1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후 안전하게 주출입구 또는 승강설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였는지 평가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주차장에서 주출입구 경로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li> </ul>   |   |
|  | 구분   |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
|  | 최우수  | 외부주차장의 경우 지붕이 설치되거나, 실내주차장의 경우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수평접근이 가능   |
|  | 우 수  | 경사로 없이 접근 가능  |
|  | 일 반  | 경사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울기가 1/12(8.33%/4.76°)이하로 설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경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평가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접근로의 기준(1.1항목)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li> <li>-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li> <li>- 기울기 1/24(4.17%/2.39°) 이하는 수평접근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함</li> <li>- 주차장시설이 없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1.2 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까지의 접근성 평가점수비율을 1.2 항목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li> </ul> $\text{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평가점수} = B \times \left( \frac{C}{A-B} \right)$ <p>A : 공원까지의 접근성 전체점수합계<br/> B : 공원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문 전체점수합계<br/> C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공원까지의 접근성 부문평가점수</p>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 제1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li> <li>-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li> <li>- 주차면 설계 상세도</li> <li>- 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 계획</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                 |     |     |                              |     |
| 평가항목                    | 1.2.2   | 주차면수 확보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를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전용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정도 평가  |  |         |         |         |     |                 |     |     |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차면수 확보</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td> <td>0.8</td> </tr> </tbody> </table> |  | 구분      | 주차면수 확보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 1.0 | 우 수 |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 0.8 |
|                         | 구분  | 주차면수 확보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최우수                     | 규정비율의 100%초과 확보   | 1.0  |         |         |         |     |                 |     |     |                              |     |
| 우 수                     | 규정비율의 100%확보(최소 1면 이상 의무 설치)  | 0.8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름</li> <li>-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li> </ul>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li> <li>-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계획</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매개시설  |        |         |         |     |                                |     |     |                                |     |
| 평가범주                    | 1.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                                |     |     |                                |     |
| 평가항목                    | 1.2.3 주차면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을 평가하여 적절한 장애인주차구역 면적을 확보하도록 함  |        |         |         |     |                                |     |     |                                |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 크기 평가  |        |         |         |     |                                |     |     |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차면 크기</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td> <td>0.8</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면은 휠체어 활동공간을 포함한 주차면의 치수로 평가함</li> <li>-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li> </ul> | 구분     | 주차면 크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 1.0 | 우 수 |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 0.8 |
|                         | 구분  | 주차면 크기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최우수                     | 폭 3.5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 1.0    |         |         |     |                                |     |     |                                |     |
| 우 수                     | 폭 3.3m, 길이 5.0m,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  | 0.8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제출서류                    | <b>예비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li> <li>-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li> <li>- 주차면 설계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b>본인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평가항목   | 1.2.4  | 보행안전통로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를 평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공원의 출입구 또는 산책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안전통행로의 폭 및 연속성 정도 평가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행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보행안전통로  |
|  | 최우수  |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8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  | 우수   |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5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  | 일반   |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폭 1.2m이상)가 연속적으로 설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어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1.1항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도 및 접근로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li> <li>-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보행안전통로는 주차면의 활동공간에서 단차 및 차량간섭 없이 연속되어야 하며, 단차(2cm이상) 또는 차량우선의 간섭이 있는 경우 평가등급을 받을 수 없음</li> <li>-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출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출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li> <li>-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li> <li>- 주차면 설계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2.5   | 안내 및 유도표시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를 평가하여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주차구역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애인이 쉽게 주차전용주차구역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주차장의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고, 주차구역까지 적정 유도표시의 연속성 정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에 장애인전용주차장표시 및 입식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정도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 및 유도표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안내 및 유도표시</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td> <td>1.0</td> </tr> <tr> <td>우수</td> <td>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td> <td>0.8</td> </tr> <tr> <td>일반</td> <td>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 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td> <td>0.7</td> </tr> </tbody> </table> |   | 구분      | 안내 및 유도표시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 1.0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 0.8 | 일반 |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 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 0.7 |
|   | 구분  | 안내 및 유도표시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연속적인 유도표시 설치  | 1.0     |           |         |     |                            |     |    |                                  |     |    |   |     |
|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 색상 등을 통한 식별성 확보  | 0.8     |           |         |     |                            |     |    |                                  |     |    |   |     |
|   | 일반  |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바로 보이며(별도 표시 없음) 바닥 및 입식 안내표시 설치   | 0.7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지 입구부터의 장애인주차구역 유도표시 연속성 정도로 평가함</li> <li>- 불가피하게 대지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여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인근주차장 이용에 대한 정확한 안내 및 유도표시와 인근주차장에서 주차입구까지의 접근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로 평가받을 수 있음</li> <li>- 입식 안내표시는 주차가능 차량, 과태료(주차방해 포함) 및 신고전화번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포함하여야 함</li> <li>-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가로 1.3m, 세로 1.5m이며,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는 가로 50cm, 세로 58cm로 함</li> </ul>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4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층 평면 및 배치도(주차입구까지의 보행안전 통로 계획)</li> <li>- 주차장 안내 및 유도 계획</li> <li>- 주차면 설계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평가범주 | 1.3   | <b>출입구</b> |
| 평가항목 | 1.3.1 | 진출입 통제 계획  |

**■ 세부평가기준**

|      |   |
|------|---|
| 평가목적 |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함                   |
| 평가방법 | 공원 <b>출입구</b> 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계획 및 휠체어사용자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 등의 설치 여부 평가 |

**배 점** 5점 (평가항목)

|             |   |  |
|-------------|---|--|
| <b>산출기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공원 <b>출입구</b>의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통제 계획 및 휠체어 진출입 계획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li> </ul> |  |
|             | 구분  |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통제 계획  |
|             | 최우수   |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 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1.5m이상의 유효폭으로 지그재그, 반원, 곡선 형태 등으로 출입구 계획             |
|             | 우 수   | 0.75m정도의 간격으로 차량 진입억제 말뚝 설치하여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속도저감 효과를 가져오며 일부분의 경우 휠체어 통과가 가능하도록 출입구 계획 |

- 차량 진입억제 말뚝의 경우 높이 0.8~1.0m, 지름 0.1m~0.2m이내로 설치되어야 함  
 - 밝은 색의 반사도로 띠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재질의 경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이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무릎정도의 높이의 어두운 색의 블라드 등으로 설치할 경우 등급 미부여)  
 - 차량 진입억제 말뚝을 0.75m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전거 등의 속도 저감 효과를 내기 위함이며, 아울러 휠체어의 통과를 위해 출입구 일부는 휠체어만 통과할 수 있는 시설계획이 필요함  
 - **출입구**에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진출입 동선이 휠체어사용자 및 보행자 동선과 분리될 경우 최우수로 평가함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b>참고자료</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b>제출서류</b> | <b>예비인증</b>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출입구</b> 평면도</li> <li>- <b>출입구</b> 단면도</li> <li>- <b>출입구</b>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b>본인증</b>   |
|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1  | 매개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1.3  | 출입구   |             |               |         |           |            |     |                         |                   |     |                         |                   |      |
| 평가항목  | 1.3.2  | 공원입구와 보도와의 경계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출입구의 높이차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공원의 출입구와 보행로의 경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진입가능한지 여부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출입구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보도와 공원 출입구의 단차</li> </ul>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보도와 출입구경계의 단차</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단차 없이 수평접근</td> <td>0.5</td> </tr> <tr> <td>우 수</td> <td>0.75m이하 단차(경사로설치)</td> <td>0.4</td> </tr> <tr> <td>일 반</td> <td>0.75m이상 단차(경사로설치)</td> <td>0.35</td> </tr> </tbody> </table> |   | 구분          | 보도와 출입구경계의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단차 없이 수평접근 | 0.5 | 우 수                     | 0.75m이하 단차(경사로설치) | 0.4 | 일 반                     | 0.75m이상 단차(경사로설치) | 0.35 |
|   | 구분   | 보도와 출입구경계의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단차 없이 수평접근  | 0.5         |               |         |           |            |     |                         |                   |     |                         |                   |      |
|   | 우 수  | 0.75m이하 단차(경사로설치)   | 0.4         |               |         |           |            |     |                         |                   |     |                         |                   |      |
| 일 반   | 0.75m이상 단차(경사로설치)  | 0.35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li> </ul>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출입구 경사로 기울기</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단차없이 수평접근</td> <td>0.5</td> </tr> <tr> <td>우 수</td> <td>기울기 1/18(5.56%/3.18°)이하</td> <td>0.4</td> </tr> <tr> <td>일 반</td> <td>기울기 1/12(8.33%/4.76°)이하</td> <td>0.35</td> </tr> </tbody> </table> |  | 구분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0.5        | 우 수 | 기울기 1/18(5.56%/3.18°)이하 | 0.4               | 일 반 | 기울기 1/12(8.33%/4.76°)이하 | 0.35              |      |
| 구분  | 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0.5   |             |               |         |           |            |     |                         |                   |     |                         |                   |      |
| 우 수   | 기울기 1/18(5.56%/3.18°)이하  | 0.4   |             |               |         |           |            |     |                         |                   |     |                         |                   |      |
| 일 반   | 기울기 1/12(8.33%/4.76°)이하  | 0.35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공원의 진출입을 위해 승강기가 설치되어 이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하면 우수로 평가</li> </ul>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구 평면도</li> <li>- 출입구 단면도</li> <li>- 출입구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2  | 유도 및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2.1  | 안내설비  |
| 평가항목  | 2.1.1  | 안내판 설치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촉지도식 안내판을 평가하여 시각장애인에게 공원 내의 위치 및 시설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 가능한 안내판 설치 여부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촉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안내판 설치  |
|   | 최우수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과 음성 안내장치를 함께 설치   |
|   | 우수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함께 설치  |
|   | 일반   |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 설치  |
| <p>-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가능한 안내판은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로, 글자크기는 최소 1.5cm이상으로 하고, 바탕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한 양각 글자체를 사용, 바닥면으로부터 1.0m~1.2m 범위 안에 설치하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설치하여야 함</p>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li> <li>- 촉지도식 안내판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2  | 유도 및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2.1  | 안내설비  |
| 평가항목                    | 2.1.2  | 안내판의 정보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안내판에 휠체어 장애인 등이 다닐 수 있는 시설 정보 혹은 BF산책로에 대한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안내판 정보의 질적인 부분을 평가함   |   |
| 평가방법                    | 안내판에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혹은 BF산책로의 정보 제공 유무 및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도 쉽게 인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축지도식 안내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안내판의 정보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경사진 산책로의 경우 경사 정도를 표시  |
|                         | 우 수  | 일반에 조건을 만족하며 이용 가능한 산책로를 표시   |
|                         | 일 반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
|                         |  | 평가항목 점수   |
|                         |  | 2.0   |
|                         |  | 1.6   |
|                         |  | 1.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내 산책로 중 BF산책로가 지정되어있을 경우 이에 대한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시각적으로 인지가 쉬워야 할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축지도식 혹은 점자 안내 및 음성안내가 함께 제공되는 통합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li> <li>- 안내판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주차장, 시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표시가 없을시 등급을 얻지 못함</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li>-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li> <li>- 안내판 내용</li> <li>- 안내판 시설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2  | 유도 및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2.1  | 안내설비  |
| 평가항목                    | 2.1.3  | 통합안내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안내설비는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
| 평가방법                    | 해당시설의 주요시설 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의 설치 여부 및 주출입구부터 주요시설까지 시각장애인용 유도용시설(점자블록 등)의 연속적인 설치 정도 와 적절성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각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음성안내 장치 및 연속된 유도용 시설(점자블록 등) 설치</li> </ul>  |   |
|                         | 구분   | 음성안내 장치 및 연속된 점자블록 설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지경계선에 접근 시 시각장애인이 소지한 리모콘에 의해 작동되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
|                         | 우 수  | 재질과 마감을 달리하고, 색 대비를 통해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   |
|                         | 일 반  | 점자블록을 연속 설치   |
|                         | 구분   |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그림을 병용하여 표시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외국어를 병용하여 표시   |   |
| 일 반                     |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를 사용하였으며, 주변과 명확히 대조되는 색상을 이용하여 문자 표시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 제17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li> <li>※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li> </ul>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2  | 유도 및 안내시설   |
| 평가범주  | 2.1  | 안내설비  |
| 평가항목  | 2.1.4  | 경고시설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공원 내에서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
| 평가방법  | 위험지역에 적절한 경고시설을 설치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경고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경고시설  |
|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주요 위험지역에 색상, 질감적으로 다른 마감재를 이용하여 점자블록의 기능을 확보하여 경고시설 설치   | 1.0   |
| 우수  | 주요 위험지역에 규정에 적합한 점자블록을 이용하여 주의경고시설 설치  | 0.8   |
| <p>- 주변과 조화된 환경을 만들어 모두가 함께 공원을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점형블록의 사용보다는 질감적, 색상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마감재 사용</p>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6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li>-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매뉴얼</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안내판 위치 및 시각장애인 음성안내시설 표기)</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1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 평가항목   | 3.1.1  |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응 방법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평면구성의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여부   |   |
| 배 점  | 5점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
|  | 최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는 화장실의 50%이상이 다목적 화장실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최소1개 이상의 다목적 화장실설치   |
|  | 일 반  | 최소 1개 이상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 (장애인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1개 이상 설치) 공원 내 2개소 이상 화장실이 있는 경우 전체 개수의 50%이상 적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목적 화장실이라함은 남녀 구분없이 설치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보호자와 함께 사용가능한 화장실을 말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1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 평가항목   | 3.1.2  | 안내표지판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
| 평가방법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 유무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안내표지판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안내표지판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다기능에 대한 안내표지 있음   |
|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화장실 내부의 위치 및 기능을 안내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가 있음   |
| 일반   | 화장실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점자표기를 포함한 남·여 구분 안내표지 있음<br>점자표지 0.3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 평가항목 점수   |
|  |  | 2.0   |
|  |  | 1.6   |
|  |  | 1.4   |
|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상세도</li> <li>- 화장실 안내표지판 상세도</li> <li>- 배치도(장애인 화장실 및 안내표지판의 위치 표시)</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3.2   | 화장실의 접근   |         |         |         |          |               |     |   |               |     |   |               |      |
| 평가항목  | 3.2.1   | 유효폭 및 단차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를 평가하여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가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단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모든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정도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화장실로 접근하기 위한 통로의 유효폭 및 단차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유효폭</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유효폭</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1.5m이상 통로폭 확보</td> <td>1.5</td> </tr> <tr> <td>우 수</td> <td>1.2m이상 통로폭 확보</td> <td>1.2</td> </tr> <tr> <td>일 반</td> <td>0.9m이상 통로폭 확보</td> <td>1.05</td> </tr> </tbody> </table>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1.5m이상 통로폭 확보 | 1.5 | 우 수                                       | 1.2m이상 통로폭 확보 | 1.2 | 일 반                                       | 0.9m이상 통로폭 확보 | 1.05 |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1.5m이상 통로폭 확보   | 1.5     |         |         |          |               |     |   |               |     |   |               |      |
|   | 우 수   | 1.2m이상 통로폭 확보   | 1.2     |         |         |          |               |     |   |               |     |   |               |      |
| 일 반   | 0.9m이상 통로폭 확보   | 1.05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단차</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단차</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전혀 단차 없음</td> <td>1.5</td> </tr> <tr> <td>우 수</td> <td>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td> <td>1.2</td> </tr> <tr> <td>일 반</td> <td>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td> <td>1.05</td> </tr> </tbody> </table> |   | 구분  |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전혀 단차 없음 | 1.5           | 우 수 |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 1.2           | 일 반 |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 1.05          |      |
| 구분  | 단차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전혀 단차 없음  | 1.5   |         |         |         |          |               |     |   |               |     |   |               |      |
| 우 수   |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8(5.56%/3.18°) 이하의 경사로 설치   | 1.2   |         |         |         |          |               |     |   |               |     |   |               |      |
| 일 반   | 단차가 있으며, 기울기 1/12(8.33%/4.76°) 이하의 경사로 설치   | 1.05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li> </ul>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평가범주  | 3.2  | 화장실의 접근  |         |
| 평가항목  | 3.2.2  | 바닥 마감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화장실 접근로의 마감 상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화장실로 접근 가능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탄함 및 미끄럽지 않는 정도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화장실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바닥 마감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로 마감  | 2.0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음  | 1.6     |
|   | 일반   |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음   | 1.4     |
| <p>-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p>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2  | 화장실의 접근  |
| 평가항목                    | 3.2.3  | 출입구(문)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화장실의 출입구(문)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화장실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출입문 및 적절한 폭을 확보하고, 시각장애인이 실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문) 옆에 점자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형태 및 유효폭의 확보 여부 평가  |  |
| 배 점                     | 3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화장실의 출입구(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형태 및 유효폭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2m이상 확보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출입구(문) 유효폭을 1.0m이상 확보  |
|                         | 일반   | 유효폭 0.9m이상의 여단이, 미단이 등의 출입문 형태로 설치   |
|                         |  | 평가항목 점수  |
|                         |  | 3.0  |
|                         |  | 2.4  |
|                         |  | 2.1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의 출입문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폭에서 경첩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li> <li>- 화장실의 출입문이 없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 형태는 자동문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유효폭만으로 평가등급을 부여함</li> <li>-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화장실 출입문 입면도 및 상세도</li> <li>- 화장실 출입문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설치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평가항목 | 3.3.1 | 칸막이 출입문 |

**■ 세부평가기준**

|      |  |
|------|--|
| 평가목적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을 평가하여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이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로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함 |
| 평가방법 |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칸막이 출입문의 유효폭 및 형태, 기타 설비 설치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b>산출기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대변기의 칸막이 출입문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유효폭</li> </ul>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60%;">유효폭</th> <th style="width: 20%;">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유효폭 1.0m이상</td> <td>0.5</td> </tr> <tr> <td>우 수</td> <td>유효폭 0.9m이상</td> <td>0.4</td> </tr> </tbody> </table>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유효폭 1.0m이상 | 0.5 | 우 수                 | 유효폭 0.9m이상               | 0.4 |                    |      |
|   | 구분  | 유효폭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최우수   | 유효폭 1.0m이상               | 0.5     |         |                           |            |     |                     |                          |     |                    |      |
|   | 우 수   | 유효폭 0.9m이상               | 0.4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형태</li> </ul>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60%;">형태</th> <th style="width: 20%;">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자동문</td> <td>0.5</td> </tr> <tr> <td>우 수</td> <td>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td> <td>0.4</td> </tr> </tbody> </table> | 구분                       | 형태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자동문        | 0.5 | 우 수                 |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 0.4 |                    |      |
|   | 구분  | 형태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최우수   | 자동문                      | 0.5     |         |                           |            |     |                     |                          |     |                    |      |
|   | 우 수   | 내부공간이 확보된 밖여닫이 또는 미닫이 형태 | 0.4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사용여부 설비</li> </ul>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60%;">사용여부 설비</th> <th style="width: 20%;">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td> <td>0.5</td> </tr> <tr> <td>우 수</td> <td>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td> <td>0.4</td> </tr> <tr> <td>일 반</td> <td>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td> <td>0.35</td> </tr> </tbody> </table> | 구분  | 사용여부 설비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 0.5        | 우 수 |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 0.4                      | 일 반 |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 0.35 |
| 구분  | 사용여부 설비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최우수   | 불이 켜지는 문자 시각설비 설치   | 0.5                      |         |         |                           |            |     |                     |                          |     |                    |      |
| 우 수   |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알 수 있음   | 0.4                      |         |         |                           |            |     |                     |                          |     |                    |      |
| 일 반   | 색상으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음  | 0.35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잠금장치</li> </ul>   |   |                          |         |         |                           |            |     |                     |                          |     |                    |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20%;">구분</th> <th style="width: 60%;">잠금장치</th> <th style="width: 20%;">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td> <td>0.5</td> </tr> <tr> <td>우 수</td> <td>잠금장치를 설치함</td> <td>0.4</td> </tr> </tbody> </table>  | 구분  | 잠금장치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 0.5        | 우 수 | 잠금장치를 설치함           | 0.4                      |     |                    |      |
| 구분  | 잠금장치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최우수   | 누구나 사용이 편리한 형태의 잠금장치를 설치함   | 0.5                      |         |         |                           |            |     |                     |                          |     |                    |      |
| 우 수   | 잠금장치를 설치함   | 0.4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사용여부 설비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 칸막이 뿐 아니라 일반 칸막이에도 모두 설치하여야 함</li> <li>- 대변기 칸막이의 유효폭은 문틀 내부 쪽에서 정척의 내민 거리와 문의두께를 뺀 나머지 폭으로 측정함</li> <li>-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li> </ul>   |   |                          |         |         |                           |            |     |                     |                          |     |                    |      |

**■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
|-------------|--|
| <b>참고자료</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b>제출서류</b> | <b>예비인증</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화장실 칸막이 입면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b>본인증</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 평가항목   | 3.3.2  | 활동공간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대변기 내부의 활동공간을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활동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대변기 내부 유효 바닥면의 크기로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대변기 칸막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활동공간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2.0m이상, 깊이2.1m이상 이 되도록 설치   | 2.0     |
| 우수   |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이 폭 1.6m이상, 깊이 2.0m이상 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 측면 활동공간 0.75m 이상 확보 및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 1.4m × 1.4m 이상 확보  | 1.6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칸막이로 설치된 칸막이의 활동공간으로 평가함</li> <li>-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li> </ul>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대변기 칸막이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평가항목  | 3.3.3  | 형태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 및 높이로 설치되도록 함   |   |
| 평가방법  | 대변기의 형태 및 설치 높이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대변기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형태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비데설치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는 벽걸이형으로 설치  |
|   | 일 반  | 대변기는 양변기로 설치하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0.45m  |
| <p>- 1,500㎡ 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p>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대변기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 평가항목   | 3.3.4   | 손잡이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대변기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재질과 굵기의 손잡이가 적절한 높이에 설치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대변기 수평 및 수직손잡이 재질과 굵기, 설치 높이로 평가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대변기 손잡이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손잡이는 차갑거나 미끄럽지 않은 재질의 손잡이 설치  | 2.0     |
| 우수   | 대변기 양옆에 수평손잡이는 높이 0.6m~0.7m위치에 설치<br>변기중심에서 0.4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br>다른 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내외로 설치할 수 있음<br>수직손잡이는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0.9m이상의 길이로 설치<br>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 1.6   |         |
| -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대변기 손잡이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3  | 대변기  |
| 평가항목                    | 3.3.5  | 기타설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대변기에 세정장치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대변기 세정장치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정장치가 설치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세정장치의 설치 형태 및 기타설비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대변기 기타설비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기타설비   |
|                         | 평가항목 점수  |  |
|                         | 최우수  | 우수 조건을 만족하고 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및 누름 버튼(바닥 또는 벽면) 설치  |
|                         | 우수   | 대변기에 비상호출벨 및 등반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앉은 상태에서 화장지걸이 등의 기타설비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br>세정장치는 광감지식(또는 자동 물내림 장치) 또는 바닥+벽면 누름 버튼 장치 설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용 거치대는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또는 일반화장실에 설치한 것을 평가함</li> <li>- 조명스위치 및 화장지걸이는 바닥면에서 0.8m ~ 1.2m이내에 설치하여야 함</li> <li>-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할 경우 자동문버튼은 바닥면에서 0.8m ~ 0.9m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코너로부터 0.4m ~ 0.5m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li> <li>-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li> <li>-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li> </ul>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대변기 세정장치 상세도</li> </ul>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3.4   | 소변기  |         |          |         |     |                                      |     |    |                             |     |    |  |     |
| 평가항목                    | 3.4.1   | 형태 및 손잡이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소변기의 형태 및 손잡이를 평가하여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지탱하는 힘이 부족한 다양한 사용자가 소변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소변기와 손잡이가 설치되도록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소변기의 형태 및 수평·수직손잡이 굽기, 설치 높이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소변기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점으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형태 및 손잡이</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td> <td>2.0</td> </tr> <tr> <td>우수</td> <td>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td> <td>1.6</td> </tr> <tr> <td>일반</td> <td>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br/>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br/>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td> <td>1.4</td> </tr> </tbody> </table> <p>-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p> |  | 구분      | 형태 및 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 2.0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 1.6 | 일반 |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br>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br>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 1.4 |
|                         | 구분  | 형태 및 손잡이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우수의 기준을 만족하며, 손잡이의 재질이 차갑지 않은 손잡이 설치   | 2.0     |          |         |     |                                      |     |    |                             |     |    |  |     |
|                         | 우수  | 일반의 기준을 만족하며, 바닥부착형의 소변기 설치  | 1.6     |          |         |     |                                      |     |    |                             |     |    |  |     |
| 일반                      | 수평손잡이는 높이 0.8m~0.9m,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로 설치 좌우손잡이 간격은 0.6m내외로 설치<br>수직손잡이는 높이 1.1m~1.2m, 돌출폭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br>손잡이 두께는 지름 3.2cm~3.8cm가 되도록 설치  | 1.4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소변기 상세도</li> <li>- 소변기 손잡이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 평가항목   | 3.5.1   | 형태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세면대 형태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세면대의 형태 평가  |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세면대 형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세면대 형태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대변기 사용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세면대 설치  | 1.0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카운터형 혹은 단독형 세면대 설치   | 0.8     |
|  | 일반  |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은 깊이 0.45m, 높이 0.65m이 확보  | 0.7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단독형으로 설치할 경우 세면대 양측면에 회전형 손잡이를 설치</li> <li>- 외부 세면대로 적용할 경우, 단독형이면 반드시 양쪽손잡이를 설치하여야하며 카운터형일 경우에는 양쪽손잡이 없어도 평가가 가능함</li> <li>-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li> </ul>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b>참고자료</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세면대 상세도</li> </ul>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평가항목   | 3.5.2  | 거울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세면대 거울을 평가하여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가 세면대 거울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세면대 거울을 설치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세면대 거울의 휠체어사용자의 사용 가능 여부 평가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세면대 거울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거울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확대경 설치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전면 거울 설치   |
|  | 일 반  | 세로길이 0.65m이상, 하단높이 바닥면으로부터 0.9m 내외, 거울상단부분이 15°정도 앞으로 경사진 경사형 거울 설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 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세면대 거울 설치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평가부문   | 3  | 위생시설   |         |
| 평가범주   | 3.5  | 세면대  |         |
| 평가항목   | 3.5.3  | 수도꼭지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평가목적   |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평가하여 장애인 등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형태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도록 함  |  |         |
| 평가방법   | 세면대 수도꼭지 형태 평가   |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세면대의 수도꼭지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 구분   | 수도꼭지   | 평가항목 점수 |
|  | 최우수  | 광감지식 설치  | 1.0     |
| 우수   | 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며, 냉수·온수 점자표시   | 0.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00㎡ 미만의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위생시설(3.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 전체의 평가점수 비율을 3.항목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li> </ul>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3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장실 층별 평면도</li> <li>- 화장실 층별 단면도</li> <li>- 세면대 수도꼭지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4  | 편의시설  |
| 평가범주  | 4.1  | 접근 및 이용성  |
| 평가항목  | 4.1.1  | 시설까지의 접근로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
| 평가방법  | 공원 내 시설의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평가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시설위치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시설까지의 접근로   |
|   | 최우수  | 주 산책로에서 눈에 잘 띄도록 위치 및 유도 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  |
|   | 우수   |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유도안내 표시가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보행로로 연결   |
|   | 일반   | 주 산책로와 이격되어 있으나 안전보행로로 연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 산책로와 인접해 있다함은 주 산책로에서 시설의 입구가 바로 보임을 말함</li> <li>- 주 산책로에서 따로 접근로를 두어 시설로 접근할 경우 접근로는 '1.1 보도 및 접근로' 일반 이상의 기준을 따르며 일반 미만일 경우 등급 미부여</li> <li>- 공원시설이 없는 경우의 점수산정은 접근 및 이용성(4.1항목전체)을 제외한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평가점수비율을 4.1 항목의 점수에 적용, 이를 평가점수로 산정함</li> </ul> |  |   |
| $\text{시설까지의 접근로부문의 평가점수} = B \times \left( \frac{C}{A - B} \right)$ <p>A :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전체점수합계<br/> B : 공원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부문 점수합계<br/> C : 공원내 시설로의 접근 및 이용성을 제외한 공원시설의 편의성-공원시설 부문평가점수</p>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li> <li>- 경사로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     |     |                         |     |
|--|---|--|---------|--------------|---------|-----|-----------|-----|-----|-------------------------|-----|-----|-------------------------|-----|
| 평가부문   | 4   | 편의시설   |         |              |         |     |           |     |     |                         |     |     |                         |     |
| 평가범주   | 4.1   | 접근 및 이용성   |         |              |         |     |           |     |     |                         |     |     |                         |     |
| 평가항목   | 4.1.2   | 공원시설의 주출입구   |         |              |         |     |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                         |     |     |                         |     |
| 평가목적   |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         |              |         |     |           |     |     |                         |     |     |                         |     |
| 평가방법   | 공원 시설의 주출입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진입 가능한지 정도를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와 기울기로 평가  |  |         |              |         |     |           |     |     |                         |     |     |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         |     |           |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주출입구 높이차이 및 경사로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주출입구 높이차이</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출입구 높이차이</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단차없이 수평접근</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0.75m이하 단차(경사로 설치)</td> <td>0.8</td> </tr> <tr> <td>일 반</td> <td>0.75m이상 단차(경사로 설치)</td> <td>0.7</td> </tr> </tbody> </table> |  | 구분      | 주출입구 높이차이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1.0 | 우 수 | 0.75m이하 단차(경사로 설치)      | 0.8 | 일 반 | 0.75m이상 단차(경사로 설치)      | 0.7 |
|  | 구분  | 주출입구 높이차이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1.0     |              |         |     |           |     |     |                         |     |     |                         |     |
|  | 우 수   | 0.75m이하 단차(경사로 설치)   | 0.8     |              |         |     |           |     |     |                         |     |     |                         |     |
|  | 일 반   | 0.75m이상 단차(경사로 설치)   | 0.7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th> <th>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최우수</td> <td>단차없이 수평접근</td> <td>1.0</td> </tr> <tr> <td>우 수</td> <td>기울기 1/18(5.56%/3.18°)이하</td> <td>0.8</td> </tr> <tr> <td>일 반</td> <td>기울기 1/12(8.33%/4.76°)이하</td> <td>0.7</td> </tr> </tbody> </table>   |  | 구분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1.0 | 우 수 | 기울기 1/18(5.56%/3.18°)이하 | 0.8 | 일 반 | 기울기 1/12(8.33%/4.76°)이하 | 0.7 |
| 구분   |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  | 평가항목 점수  |         |              |         |     |           |     |     |                         |     |     |                         |     |
| 최우수  | 단차없이 수평접근   | 1.0  |         |              |         |     |           |     |     |                         |     |     |                         |     |
| 우 수  | 기울기 1/18(5.56%/3.18°)이하   | 0.8  |         |              |         |     |           |     |     |                         |     |     |                         |     |
| 일 반  | 기울기 1/12(8.33%/4.76°)이하   | 0.7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출입구에 높이차이가 있으나 불가피하게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구로 출입구 가능한 경우, 부출입구 이용에 대한 연속적인 안내 및 유도 표시가 마련된 경우에 한하여서 부출입구로 대체하여 평가가 가능함</li> <li>- 공원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등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li> </ul> |   |  |         |              |         |     |           |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5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         |     |           |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공원시설 주출입구 평면도</li> <li>- 주출입구 단면도</li> <li>- 주출입구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     |           |     |     |                         |     |     |                         |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         |     |           |     |     |                         |     |     |                         |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4  | 편의시설  |
| 평가범주                    | 4.2  | 공원 시설   |
| 평가항목                    | 4.2.1  |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놀이공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공원 내 시설은 장애인 등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여 모두가 함께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  |   |
| 평가방법                    |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화단 혹은 놀이 공간 등의 공원 시설 설치 여부   |   |
| 배 점                     | 8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장애인을 배려한 공원시설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통합 혹은 장애인 전용 공원 놀이시설 등의 설치 여부   |
|                         | 최우수  | 통합시설로 설치  |
|                         | 우 수  | 부분적인 통합시설로 설치   |
|                         |  | 평가항목 점수   |
|                         |  | 8.0   |
|                         |  | 6.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데 차별이 없는 시설을 말함</li> <li>-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함은 위험지역의 난간설치 계획,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시설 설치가 포함되며 이는 모든 시설에 기본이 되어야 함</li> <li>-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시설은 시설의 이용에 있어 이동(수직 이동 포함)에 어려움이 없음을 말함</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li>-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공원시설 주출입구 평면도</li> <li>- 공원시설 평면도(배치도)</li> <li>- 장애인 배려 계획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4   | 편의시설  |
| 평가범주   | 4.3   | 기타설비  |
| 평가항목   | 4.3.1   | 휴식공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적절한 간격마다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휠체어사용자 등 모두가 함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함  |   |
| 평가방법   |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휴식공간 설치 여부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휴식공간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li>• 세부항목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li> </ul>   |   |
|  | 구분  | 휴게시설의 설치방법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상부에 지붕 등을 설치함   |
|  | 우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휠체어사용자와 비장애인의 휴식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
|  | 일반  | 휠체어의 진입이 가능하고, 휴식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  | 평가항목 점수   | 0.6<br>0.48<br>0.4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휴게시설은 보행장애물 중 하나로 취급되며, 그 평가 등급을 얻지 못함</li> <li>- BF보행로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구간 내 휴게시설의 평균으로 평가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원전체 휴게시설의 평균으로 평가함</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부항목 - 휴게의자의 구조</li> </ul>  |   |   |
| 구분   | 휴게의자의 구조  | 평가항목 점수   |
| 최우수  |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으며, 일어나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설치  | 0.4   |
| 우수   | 등받이가 설치   | 0.32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F보행로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구간 내 휴게의자의 평균으로 평가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원전체 휴게의자의 평균으로 평가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li>-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벤치 상세도</li> <li>- 벤치 주변 접근로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4  | 편의시설   |
| 평가범주  | 4.3  | 기타설비   |
| 평가항목  | 4.3.2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
| 평가방법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여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매표소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시설까지 유도 안내시설 설치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매표소 앞 점형블록 설치   |
|   | 일 반  | 상단높이 0.7m~0.9m, 하부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 확보  |
|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3개 시설 평가 중 최하 등급인 시설로 4.3.2 항목 평가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매표소 상세도</li> </ul>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4  | 편의시설   |
| 평가범주                    | 4.3  | 기타설비   |
| 평가항목                    | 4.3.2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
| 평가방법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여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판매기  |
|                         | 최우수  | <p>판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m~1.2m로 하며,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고,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함</p>               |
|                         |  | 평가항목 점수  |
|                         |  | 2.0  |
|                         |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3개 시설 평가 중 최하 등급인 시설로 4.3.2 항목 평가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4  | 편의시설   |
| 평가범주  | 4.3  | 기타설비   |
| 평가항목  | 4.3.2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함   |  |
| 평가방법  |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의 적정 구조 여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에 대한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음료대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음료대 주변구역의 바닥 재질을 달리 마감하여 위치 안내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광감지식 조작기 설치   |
|   | 일 반  |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br>분출구의 높이는 0.7m~0.8m이내에 설치<br>휠체어바퀴가 들어갈 수 있는 하부공간 확보<br>레버식 조작기 설치                     |
| -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3개 시설 평가 중 최하 등급인 시설로 4.3.2 항목 평가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22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음료대 상세도</li> </ul>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5  | BF보행의 연속성   |
| 평가범주  | 5.1  | 공원내부보행로   |
| 평가항목  | 5.1.1  | BF보행로의 지정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보행로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   |
| 평가방법  | 내부 산책로 중 출입구-공원시설 간을 연결하는 주요보행로를 BF보행로로의 지정여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공원 내 BF보행로의 지정여부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BF보행로의 지정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유도 안내의 연속성도 확보   |
|   | 우 수  |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 및 주요공원시설(화장실 등) 간을 연결하여 돌아 나올 수 있는 연속된 BF보행로 지정   |
|   | 일 반  | 주출입구에서부터 공원내부를 돌아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연속된 BF보행로 지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산책로 등을 BF보행로로 지정하고 이외의 다른 보행로는 경사도 및 재질 등을 평가하지 않게 함으로 인하여 보행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좀 더 다양한 공원을 만들기 위한 배려임</li> <li>- 최우수에서 말하는 유도 안내의 연속성의 확보는 BF보행유도의 연속성 및 주요 BF보행로 상에 위치한 시설의 안내 및 주출입구에서부터 안내(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배려한 음성안내, 촉지도식 안내판, 눈에 잘 띄게 디자인된 표지판의 연속된 설치 등)가 되어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함</li> <li>- BF보행로의 지정 여부에 대해 주출입구에서는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시가 되어야 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Teil 2)</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li>-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5  | BF보행의 연속성  |
| 평가범주   | 5.1  | 공원내부보행로  |
| 평가항목   | 5.1.2  | 보행안전공간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보행로의 유효폭과 높이를 평가하여 장애물 없는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기위함  |  |
| 평가방법   | 내부 보행로에서 수직 수평의 3차원적인 무장애 보행공간의 확보여부   |  |
| 배 점  | 6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보행로 폭과 높이의 평가 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보행안전 공간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행로 유효폭 1.8m이상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보행로 유효폭 1.5m이상  |
|  | 일 반  | 주요 산책로에 높이 2.5m이상, 유효폭 1.2m이상의 무장애 공간확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li> <li>- 보행로의 유효폭은, 대지내 보행로 중에 가장 유효폭이 좁은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li> <li>- 보행로 유효폭 1.5m미만의 보행로가 50m이상 연속될 경우 1.5m×1.5m이상의 교행구간을 5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교행구간 미설치시 등급 미부여)</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5  | BF보행의 연속성  |
| 평가범주                    | 5.1  | 공원내부보행로  |
| 평가항목                    | 5.1.3  | 단차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  |
| 평가방법                    | 공원 내의 모든 보행로 및 접근로의 단차 여부  |  |
| 배 점                     | 1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보행로 단차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단차   |
|                         | 최우수  | 모든 보행로에 단차 전혀 없음   |
| 우수                      | 모든 보행로에 단차 2cm이하   | 평가항목 점수  |
|                         |  | 1.0  |
|                         |  | 0.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li> <li>- 보행로의 단차는, 대지내의 보행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단차가 제일 큰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li> <li>- 보행로에 2cm이상의 단차가 있으나 턱낮추기를 통하여 단차를 극복한 경우 최하등급으로 평가함</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인증시와 동일</li> </ul>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5  | BF보행의 연속성   |
| 평가범주  | 5.1  | 공원내부보행로   |
| 평가항목  | 5.1.4  | 기울기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   |
| 평가방법  | 보행로 등의 진행 방향 및 좌우 기울기의 경사정도  |   |
| 배 점   | 5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보행로 기울기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기울기   |
|   | 최우수  | 좌우 1/50(2%/1.15°)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24(4.17%/2.39°)이하   |
| 우수  | 좌우 1/24(4.17%/2.39°)이하, 진행방향 기울기 1/18(5.56%/3.18°) 이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li> <li>- 보행로의 기울기는 대지내의 보행로에 경사가 있는 경우 경사가 제일 급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li> <li>- 경사로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5  | BF보행의 연속성   |
| 평가범주                    | 5.1  | 공원내부보행로   |
| 평가항목                    | 5.1.5  | 바닥 마감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   |
| 평가방법                    | 미끄럽지 않은 바닥 재질 및 마감의 평탄한 정도와 미끄럼방지설비 설치 여부 평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보행로 바닥 마감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바닥 마감   |
|                         | 최우수  | 우수의 조건을 만족하며, 넘어져도 충격이 적은재료로 마감   |
|                         | 우 수  | 일반의 조건을 만족하며, 틈새가 전혀 없이 평탄하게 마감   |
|                         | 일 반  | 물이 묻어도 전혀 미끄럽지 않고 걸려 넘어질 염려 없으며 틈새가 없이 평탄하게 마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li> <li>- 보행로의 바닥이 여러 재료로 마감되어 있는 경우 그 마감 정도가 가장 미비한 곳을 기준으로 평가함</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li> <li>- 경사로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5   | BF보행의 연속성   |
| 평가범주                    | 5.1   | 공원내부보행로   |
| 평가항목                    | 5.1.6   | 자전거도로와의 접점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   |
| 평가방법                    | 자전거도로와의 접점 없이 연속적인 안전보행로의 확보여부  |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자전거와의 접점 여부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와의 접점   |
|                         | 최우수   | 전체 보행구간에 자전거도로와의 교행 없음  |
|                         | 우수  | 보행구간에 자전거도로와의 교행 있을시 적절한 경고와 보행자 우선(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계획수립   |
|                         | 일반  | 보행구간에 자전거도로와의 교행 있을시 위험에 대한 경고시설 설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li> <li>- 자전거도로와의 교행에서 위험에 대한 경고는 보행자(시각장애인)가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다른 마감 재질 혹은 색상의 구별이 가능한 재질로 설치</li> </ul>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li> <li>- 경사로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평가부문   | 5   | BF보행의 연속성   |
| 평가범주   | 5.1   | 공원내부보행로   |
| 평가항목   | 5.1.7   | 보행유도의 연속성   |
| <b>■ 세부평가기준</b>  |   |   |
| 평가목적   | 공원의 산책로는 장애인 등에게 있어 안전보행로가 되어야 하며, 그 보행로는 BF연속성을 가져야 함  |   |
| 평가방법   | 시각장애인 등을 배려한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여부  |   |
| 배 점  | 10점 (평가항목)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보행유도의 연속성을 위한 장치나 시설계획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   |
|  | 구분  | 보행유도의 연속성   |
|  | 최우수   | 시각장애인 및 일반인의 보행유도를 위해 연속적인 물길, 보행로와 어울리는 유도레일 등을 설치하여 보행유도  |
|  | 우수  | 시각장애인의 보행유도 및 시설안내를 위해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   |
|  | 일반  | 시각장애인의 유도 및 경고를 위하여 전체구간 보도의 양 옆으로 보행 유도존을 설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된 BF보행로를 평가하며, 보행로 미지정시 전체 보행로를 평가함</li> <li>- 유도용 선형블록을 이용한 보행유도 지양함</li> <li>- 보행 유도존이라 함은 보행안전공간 양 측에 경계용 공간을 두어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유도하는 존을 말함</li> <li>- 공원 주출입구에서의 길 찾기를 최우선으로 검토(공원내부에서 주출입구까지 들어갔다 나가는 동선의 유도 연속성 확보여부)</li> </ul>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2호</li> <li>-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제17호</li> <li>- 일본 동경도 복지마을 만들기 조례</li> <li>- 독일 편의증진 관련법규(DIN 18024 Blatt 1)</li> <li>- 스위스 편의증진 관련법규(Norm SN 521 500)</li> <li>- 일본 녹지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매뉴얼</li> </ul>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배치도</li> <li>- 공원내 주요 보행로 상세도</li> <li>- 경사로 상세도</li> <li>- 바닥 마감 계획 상세도</li> </ul> <p>※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p> |
|  | 본인증   | - 예비인증시와 동일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준 - 공원   |   |         |         |         |          |                      |  |
|-------------------------|---|---------|---------|---------|----------|----------------------|--|
| 평가부문                    | 6      종합평가   |         |         |         |          |                      |  |
| 평가범주                    |   |         |         |         |          |                      |  |
| 평가항목                    |   |         |         |         |          |                      |  |
| <b>■ 세부평가기준</b>         |   |         |         |         |          |                      |  |
| 평가목적                    | 해당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평가하여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다양한 사용자가 해당시설에 접근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   |         |         |         |          |                      |  |
| 평가방법                    | 편의시설 설치의 종합적 평가   |         |         |         |          |                      |  |
| 배 점                     | 5% (평가항목의 총점기준)   |         |         |         |          |                      |  |
| 산출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점 = 편의시설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점수로 평가</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60%;">편의시설 평가</th> <th style="width: 25%;">평가항목 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등급 구분 없음</td> <td style="text-align: center;">※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td> <td></td> </tr> </tbody> </table> | 구분      | 편의시설 평가 | 평가항목 점수 | 등급 구분 없음 |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
| 구분                      | 편의시설 평가   | 평가항목 점수 |         |         |          |                      |  |
| 등급 구분 없음                | ※ 심사위원의 평가내용을 자필로 기입  |         |         |         |          |                      |  |
| <b>■ 평가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b> |   |         |         |         |          |                      |  |
| 참고자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산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휴게실(모유수유실 등) 설치</li> <li>- 해당없음 항목을 적합하게 설치</li> <li>- 그 외 추가 시설을 설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조명 등 설치 등</li> </ul> </li> </ul> </li> </ul>   |         |         |         |          |                      |  |
| 제출서류                    | 예비인증  | - 해당 없음 |         |         |          |                      |  |
|                         | 본인증   | - 해당 없음 |         |         |          |                      |  |



## 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32호, 2021. 7. 27., 일부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2. 7. 28.] [법률 제18332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 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전문개정 2015. 1. 28.]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전문개정 2015. 1. 28.]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들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

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9조에서 이동 <2015. 1. 28.>]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9까지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인증 신청 전에 대상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이하 “의무인증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을 받은 의무인증시설의 시설주는 제10조의3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1. 6. 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8.>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이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9. 12. 3.>]

**제10조의6(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5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6은 제10조의7로 이동 <2019. 12. 3.>]

**제10조의7(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7은 제10조의8로 이동 <2019. 12. 3.>]

**제10조의8(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7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본조신설 2015. 1. 28.]

[제10조의7에서 이동 <2019. 12. 3.>]

**제10조의9(인증 통계의 작성·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의 활성화 및 제10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별 인증의 현황 등 인증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등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0조의10(인증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는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인증기관 관리·지원
2. 인증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3. 인증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10조의11(인증 수수료)** ① 시설주는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및 예비인증 신청,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연장신청(이하 “인증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인증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인증 신청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수료 납부의 방법·기간, 수수료 감면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8.]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5. 1. 28.]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大修繕)·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 12. 31.]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 28.]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들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전문개정 2015. 1. 28.]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한국수어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5. 1. 28.]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18조 삭제** <2003. 12. 31.>

**제19조 삭제** <2003. 12. 31.>

**제20조 삭제** <2003. 12. 31.>

**제21조 삭제** <2003. 12. 31.>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전문개정 2015. 1. 28.]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금액
2. 부과 사유
3. 납부기한
4. 수납기관
5. 이의 제기 방법
6. 이의 제기 기관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5. 1. 28.]

[제28조에서 이동 <2015. 1. 28.>]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2. 3., 2019. 12. 3., 2021. 6. 8., 2021. 7. 2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예비인증을 포함한다) 및 유효기간 연장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3. 제11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4.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8.]

## 제28조

[종전 제28조는 제24조로 이동 <2015. 1. 28.>]

## 제29조

[종전 제29조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 1. 28.>]

**부칙** <제18332호, 2021. 7.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4.] [대통령령 제32158호, 2021. 11. 30., 일부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4.] [대통령령 제32158호, 2021. 11.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12., 2015. 7. 24.>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 8. 22., 2014. 11. 28., 2015. 7. 24.>

[전문개정 2007. 2. 12.]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전문개정 2015. 7. 24.]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① 법 제10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1. 30.>

② 법 제10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1. 30.>

[본조신설 2015. 7. 24.]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 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 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 6. 23., 2006. 6. 12., 2007. 2. 12.,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3(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15. 12. 31.>]

**제6조의4(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4는 제6조의5로 이동 <2015. 12. 31.>]

**제6조의5(회의)** ①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5는 제6조의6으로 이동 <2015. 12. 31.>]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조의6은 제6조의7로 이동 <2015. 12. 31.>]

**제6조의7(심의회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 6. 29.]

[제6조의6에서 이동 <2015. 12. 31.>]

**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 2. 12.>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12.>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 2. 12., 2012. 8. 22., 2015. 7. 24.>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3. 삭제 <2006. 1. 19.>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본조신설 2004. 6. 29.]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 30., 2020. 10. 27., 2021. 4. 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4.]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1. 11. 30.>

③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④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4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5. 7. 24.]

**제10조 삭제** <2004. 6. 29.>

**제11조 삭제** <2004. 6. 29.>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2. 12., 2008. 2. 29., 2010. 3. 15., 2015. 7. 24.>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

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18.>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6. 18.>

[제목개정 2015. 7. 24.]

[제14조에서 이동 <2015. 7. 24.>]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0. 6. 18.]

**제14조** [제12조의2로 이동 <2015. 7. 24.>]

**제15조 삭제** <2004. 6. 29.>

**부칙** <제32158호, 2021. 11. 30.>

이 영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서식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별표 2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2의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의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별표 4] 삭제 <2007.2.12.>

[별표 1] <개정 2018. 1. 30.>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1. 공원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 (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대피소
- (5) 공중화장실
-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다. 문화 및 집회시설

-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



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바. 의료시설

-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삭제 <2012.8.22.>

####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아. 노유자시설

-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 자. 수련시설

-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 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차. 운동시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 (1) 체육관
- (2) 운동장 (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 카. 업무시설

-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타. 숙박시설

-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 하. 자동차관련시설

- (1) 주차장
- (2) 운전학원

####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더. 묘지관련시설

- (1) 화장시설
-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러. 관광휴게시설

-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머.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7.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 기준  |
|---------------------------------|--|
|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라. 점자블록                         |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
|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br>(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 편의시설의 종류                | 설 치 기 준   |
|-------------------------|---|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p>(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p>   |
|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p> |
|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p>   |
|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p>             |
|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p>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

|   |  |
|---|--|
| <p>(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p> | <p>(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p> <p>(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
| <p>(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p>                                     | <p>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
| <p>(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p>                                       | <p>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
| <p>(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p>                                | <p>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
| <p>(10) 점자블록</p>  | <p>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p>  |
| <p>(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p>                                    | <p>(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삭제&lt;2007.2.12&gt;</p> <p>(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p>  |

|  |   |
|--|---|
| <p>(12) 시각 및 청각장애인<br/>경보·피난설비</p>                             | <p>(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들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장애인들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
| <p>(13) 장애인들의 이용이<br/>가능한 객실 또는<br/>침실</p>                     | <p>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p>   |
| <p>(14) 장애인들의 이용이<br/>가능한 관람석,<br/>열람석 또는 높이<br/>차이가 있는 무대</p> | <p>(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가 2천석 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p> <p>(나)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p> |
| <p>(15) 장애인들의 이용이<br/>가능한 접수대<br/>또는 작업대</p>                   | <p>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
| <p>(16) 장애인들의 이용이<br/>가능한 매표소<br/>·판매기 또는<br/>음료대</p>          | <p>매표소(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 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
| <p>(17) 임산부 등을 위한<br/>휴게시설 등</p>                               | <p>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p>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대상시설                  | 편의시설  | 매개시설     |             | 내부시설         |        |    | 위생시설      |     |     | 안내시설 |         | 그 밖의 시설 |           |           |       |         |         |             |                |
|-----------------------|---|----------|-------------|--------------|--------|----|-----------|-----|-----|------|---------|---------|-----------|-----------|-------|---------|---------|-------------|----------------|
|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      | 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침실 | 관람석·열람석 | 접수대·작업대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                       |   |          |             |              |        |    |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           |           |       |         |         |             |                |
| 제1종<br>근린<br>생활<br>시설 |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 이용원·미용원·목욕장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         |           |           |       |         |         |             |                |
|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의무      | 권장      | 의무        |           |       |         | 의무      |             |                |
|                       | 대피소   | 의무       |             | 의무           | 의무     |    |           |     |     |      |         | 권장      |           |           |       |         |         |             |                |
|                       | 공중화장실   | 의무       |             | 의무           | 의무     |    | 의무        | 의무  | 의무  |      | 의무      |         |           |           |       |         |         |             |                |
|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           |           |       |         |         |             |                |
|                       | 지역아동센터(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권장      | 의무        |           |       |         |         |             |                |
| 제2종<br>근린<br>생활<br>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음료·차·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3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           |           |       |         |         |             |                |
|                       | 공연장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의무      | 의무      | 의무        |           | 의무    |         | 의무      | 의무          |                |
|                       | 안마시술소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권장      | 권장        | 의무        |       |         |         |             |                |



| 대상시설       |  | 편의시설     |             |              | 매개시설   |    | 내부시설      |     |     | 위생시설 |    |         | 안내시설 |           |           | 그 밖의 시설 |         |         |             |                 |
|------------|--|----------|-------------|--------------|--------|----|-----------|-----|-----|------|----|---------|------|-----------|-----------|---------|---------|---------|-------------|-----------------|
|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회장실 |     |      | 욕실 | 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침실   | 관람석·열람석 | 접수대·작업대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
|            |  |          |             |              |        |    |           | 대번기 | 소번기 | 세면대  |    |         |      |           |           |         |         |         |             |                 |
| 문화 및 집회 시설 | 공연장 및 관람장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 의무      | 의무   | 의무        |           | 의무      |         | 의무      | 의무          |                 |
|            | 집회장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      | 의무        |           |         |         |         |             |                 |
|            | 전시장, 동·식물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의무      | 권장   | 의무        |           |         |         | 권장      | 의무          |                 |
| 종교 시설      |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말하며, 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      | 의무        |           | 권장      |         |         | 권장          |                 |
| 판매 시설      |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 권장   | 의무        |           |         |         |         | 권장          |                 |
| 의료 시설      | 병원·격리병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의무   | 의무        |           |         | 권장      | 권장      |             |                 |
| 교육 연구 시설   |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 유치원은 제외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         | 의무   | 의무        | 의무        |         | 권장      | 권장      | 권장          |                 |
|            | 유치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         |      |           |           |         |         |         | 권장          |                 |
|            |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 권장      | 권장   | 의무        |           | 권장      | 권장      |         | 권장          |                 |
|            | 도서관(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 권장      | 권장   | 의무        |           | 의무      | 권장      |         | 권장          |                 |

| 대상시설                   |  | 편의시설     |             |               | 매개시설   |    | 내부시설      |     |     | 위생시설 |    |         | 안내시설 |           |           | 그 밖의 시설 |         |         |             |                |
|------------------------|--|----------|-------------|---------------|--------|----|-----------|-----|-----|------|----|---------|------|-----------|-----------|---------|---------|---------|-------------|----------------|
|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      | 욕실 | 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침실   | 관람석·열람석 | 접수대·작업대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                        |  |          |             |               |        |    |           | 대번기 | 소번기 | 세면대  |    |         |      |           |           |         |         |         |             |                |
| 노유자 시설                 |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    |         |      |           |           |         |         |         | 권장          |                |
|                        |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      |           | 권장        |         |         |         |             |                |
|                        |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 수련 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권장   |    | 권장      | 의무   | 의무        |           |         |         |         |             |                |
| 운동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      |           |           | 권장      |         |         | 권장          |                |
| 업무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 의무      | 의무   | 의무        |           |         | 의무      | 의무      |             |                |
|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5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      |           |           |         | 권장      | 권장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의무      | 의무   | 의무        |           |         | 의무      | 의무      |             |                |
| 숙박 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         | 의무   | 의무        |           | 권장      |         |         |             |                |
|                        | 관광숙박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의무   | 의무        |           | 권장      |         | 권장      |             |                |
| 공 장                    |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권장   |           |           | 권장      |         | 권장      |             |                |

| 대상시설            |   | 편의시설     |             |               | 매개시설   |    | 내부시설      |     |     | 위생시설 |    |         | 안내시설 |           |           | 그 밖의 시설 |         |         |             |                |
|-----------------|---|----------|-------------|---------------|--------|----|-----------|-----|-----|------|----|---------|------|-----------|-----------|---------|---------|---------|-------------|----------------|
|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      | 욕실 | 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침실   | 관람석·열람석 | 접수대·작업대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                 |   |          |             |               |        |    |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      |           |           |         |         |         |             |                |
| 자동차<br>관련<br>시설 | 주차장   | 의무       | 의무          | 의무            |        |    | 권장        |     |     |      |    |         |      |           |           |         |         |         |             |                |
|                 | 운전학원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      |           |           |         | 권장      |         |             |                |
| 방송통신<br>시설      | 방송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         | 권장   | 의무        |           |         |         |         |             | 권장             |
|                 |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         | 권장   | 의무        |           |         | 권장      |         |             | 권장             |
| 교정<br>시설        | 교도소·구치소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 권장      |      |           |           |         | 권장      | 권장      | 권장          |                |
| 묘지<br>관련<br>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         |      | 권장        |           |         |         |         |             |                |
| 관광<br>휴게<br>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         | 권장   | 권장        |           | 권장      |         | 권장      | 권장          |                |
|                 | 휴게소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         | 권장   |           |           |         |         | 권장      | 의무          |                |
| 장례식장            |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         | 의무   | 권장        | 의무        |         |         |         | 권장          | 권장             |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 기준  |
|--|--|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p>(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p>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p>(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p> <p>(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p>               |
|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p>  |
|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p>(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
|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 <p>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p>   |
|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p>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p>   |

|                                 |   |
|---------------------------------|---|
|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8) 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
|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p>(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및 (3)부터 (7)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주택법」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p>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 편의시설<br>대상시설 | 매개시설     |             |               | 내부시설   |    | 위생시설      |            |            |     | 안내시설 |         | 기타시설 |           |           |       | 비고 |         |         |   |
|--------------|----------|-------------|---------------|--------|----|-----------|------------|------------|-----|------|---------|------|-----------|-----------|-------|----|---------|---------|---|
|              | 주출입구 접근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br>대변기 | 화장실<br>소변기 | 세면대 | 욕실   | 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 및 안내설비 | 경보 및 피난설비 | 객실·침실 |    | 관람석·열람석 | 접수대·작업대 | 매표소·판매기·음료대   |
| 아파트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의무        | 권장        |       |    |         |         |   |
| 연립주택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의무        | 권장        |       |    |         |         |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
| 다세대주택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권장      |      | 의무        | 권장        |       |    |         |         |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만 해당   |
| 기숙사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의무  | 권장   | 권장      |      | 의무        | 의무        |       |    |         |         | 기숙사가 2동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장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의 경우 출입구(문)는 권장사항임 |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

| 편의시설의 종류              | 설치 기준   |
|-----------------------|---|
|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 <p>(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머리뼈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p> |
|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0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9. 27.]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5. 7. 29.>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7.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 6. 8.>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3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6명 이상일 것. 이 경우 건축, 토목, 조경 및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 각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적합성 확인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갖출 것
3. 적합성 확인과 관련한 연구 또는 사업추진 실적이 있을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관련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시설주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을 의뢰 받은 대행기관은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를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4조(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0.>

1.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
2.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의 적합 여부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설주관기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9.>
    1.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
    2. 편의시설 종류별 설치 현황
    3. 건축물 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4. 시설주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5.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현황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조사대상의 선정, 조사기간의 설정,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하며, 그 밖의 실태조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6. 30.>

[제목개정 2016. 6. 30.]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 12. 30.>

**제6조의2(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한다.

1. 보행에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된 경우

[본조신설 2015. 7. 29.]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영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30., 2012. 9. 4., 2015. 7. 29.>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9. 4.]

**제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 5.]

**부칙** <제672호, 2019. 9. 27.>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별표 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제6조 관련)

##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 경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들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 2. 삭제 <2007.3.9.>

### 3. 삭제 <2007.3.9.>

###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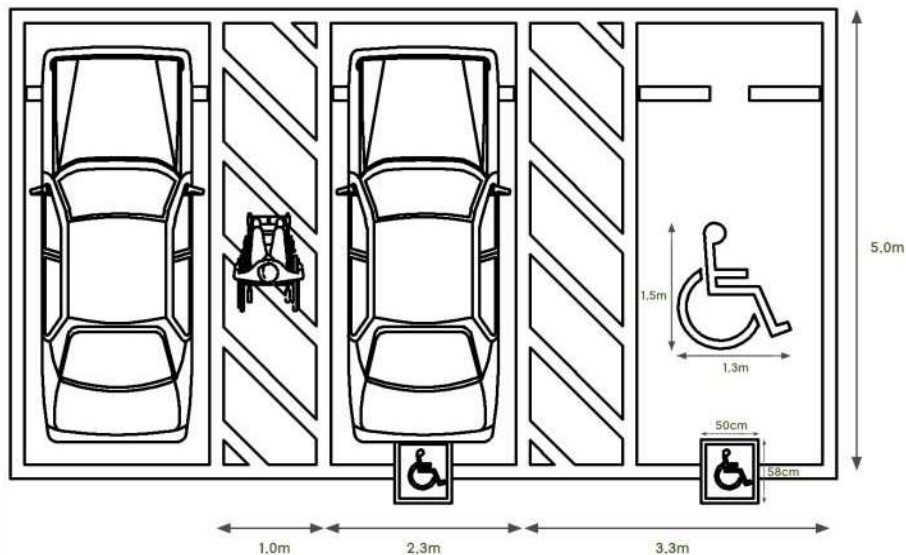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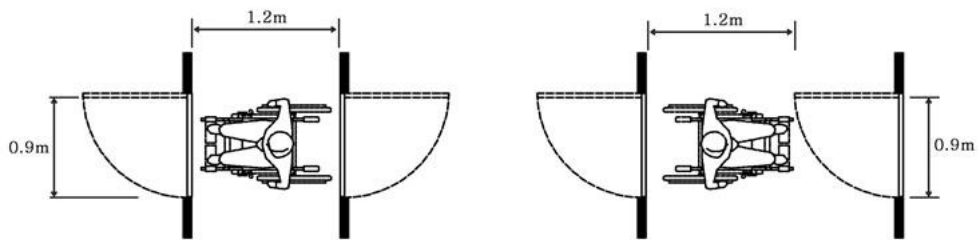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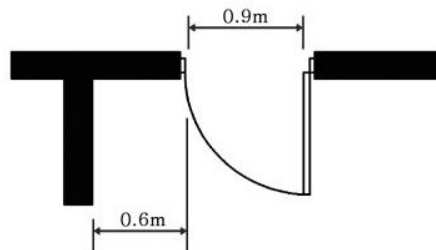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나. 문의 형태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라. 기타 설비

-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가.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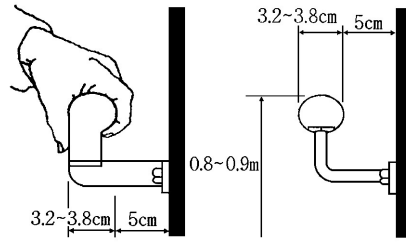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나. 바닥

-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삭제 <200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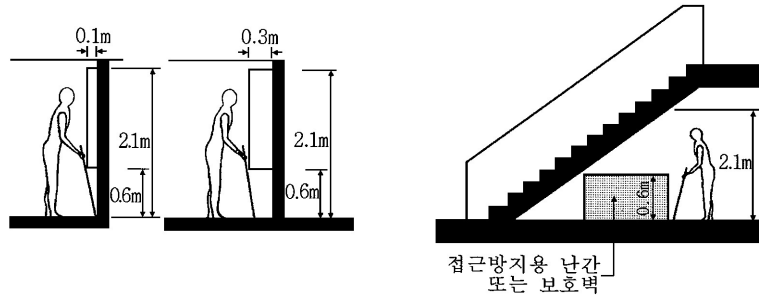
### 다. 손잡이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확보**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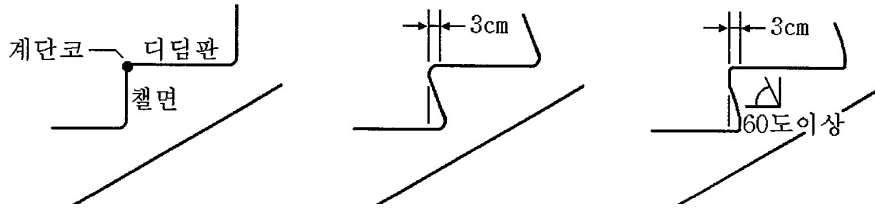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철편**

- (1) 계단에는 철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 다.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 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11. 휠체어리프트

#### 가. 일반사항

-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12. 경사로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는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

다.

-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다. 손잡이

-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라. 재질과 마감

-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가. 일반사항

- (1) 설치장소
  -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재질과 마감
  -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3) 기타 설비
  -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

### (1) 활동공간

-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라)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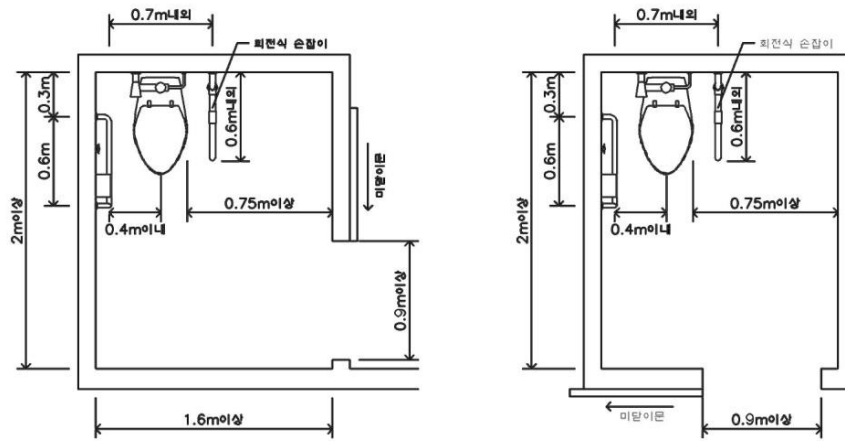
### (2) 구조

- (가)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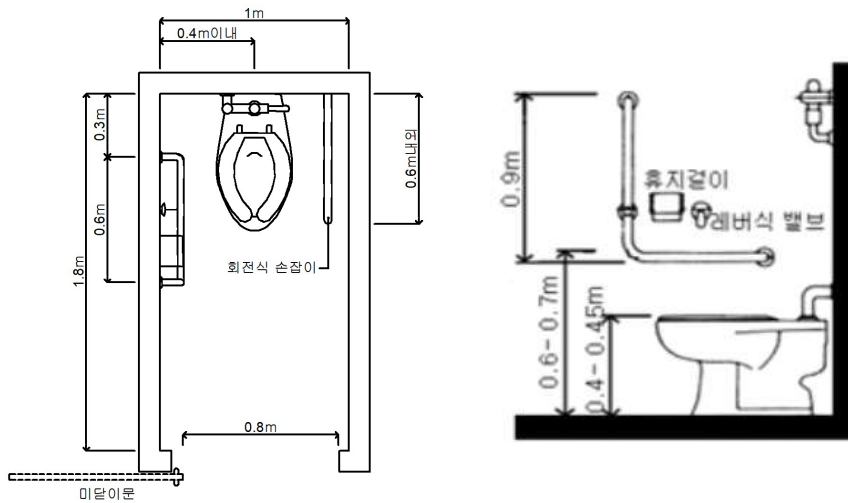
### (3) 손잡이

-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4) 기타 설비

-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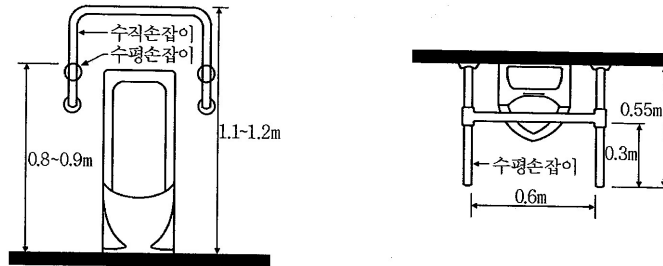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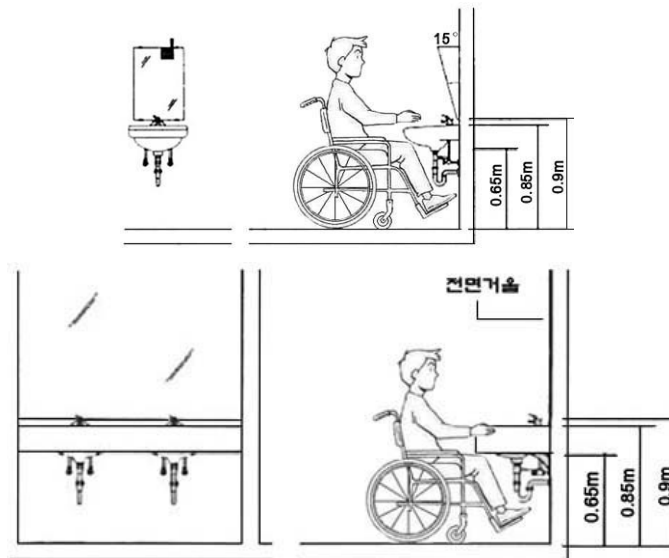
라. 세면대

(1) 구조

-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다. 바닥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바닥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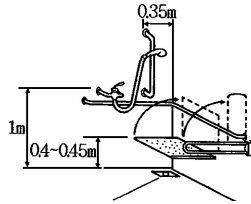
###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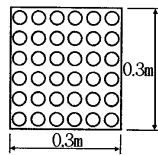


-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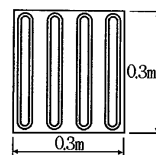
## 16. 점자블록

### 가. 규격 및 색상

-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 \pm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 \pm 0.1$ 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록



선형블록

-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설치방법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18.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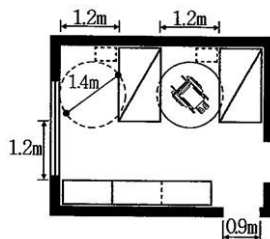
##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 바닥

-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라.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가목(2)(가)·(3)(나), 나목(1)부터 (3)까지·(4)(가), 라목 및 제1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7)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다. 열람석의 구조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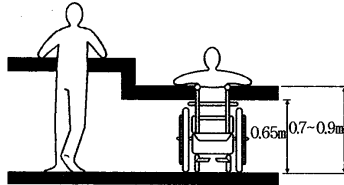
###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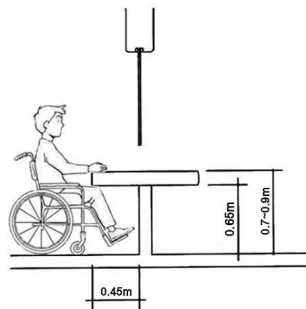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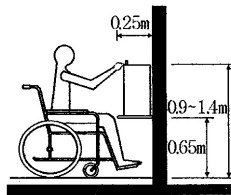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비교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 1. 삭제 <1999.6.8>

### 2. 안내표시기준

가.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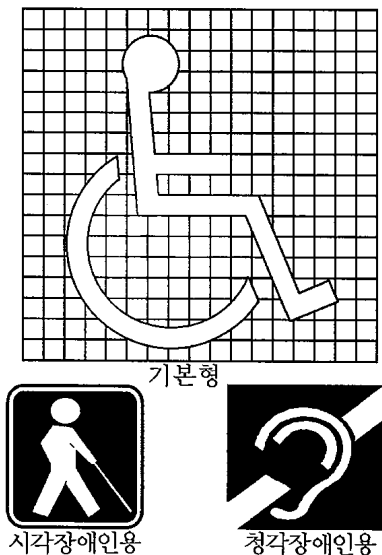
다. 시각장애이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이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마.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 3. 작도법

편의시설 안내표지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 대상시설      |   | 비치용품  |   |
|-----------|---|---|---|
|           |   | 의무용품  | 권장용품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읍·면·동사무소  | 점자업무안내책자,<br>8배율이상의 확대경,<br>공중팩스기 및<br>보청기기                           | 편의시설안내지도  |
|           | 우체국, 전신전화국  | 8배율이상의 확대경,<br>공중팩스기 및<br>보청기기  | 점자업무안내책자  |
|           | 공공도서관   | 보청기기  | 저시력용 독서기  |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 관람장  | 보청기기  | 점자공연안내책자  |
|           | 전시장, 동·식물원  |   | 휠체어 및<br>점자전시안내책자                                 |
| 판매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br>1천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점  |   | 음성계산기   |
|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 저시력용 독서기,<br>음성지원컴퓨터 및<br>보청기기  | 점자프린터,<br>컴퓨터(정보통신보조<br>기기를 포함한다)                 |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br>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br>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br>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br>아니하는 것 | 점자업무안내책자(시·<br>군·구청에 한한다),<br>휠체어, 8배율<br>이상의 확대경,<br>공중팩스기 및<br>보청기기 | 점자업무안내책자,<br>편의시설안내지도,<br>컴퓨터(정보통신보조<br>기기를 포함한다) |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 점자관광안내책자  |
| 장례식장      |   | 입식 식탁   |   |
| 운동시설      | 수영장   | 입수용 휠체어   |   |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 09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관한 규칙

---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39호, 2021. 12. 3., 일부개정]

[시행 2021. 12. 4.] [국토교통부령 제918호, 2021. 12. 3., 일부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12. 4.] [보건복지부령 제839호, 2021. 12. 3., 일부개정]

[시행 2021. 12. 4.] [국토교통부령 제918호, 2021. 12.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5, 제10조의7, 제10조의10, 제10조의11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 8. 3.]

**제3조(인증의 신청)**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군·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8. 3.>

### 1.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③ 개별시설의 소유자·관리자·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1.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3.>

**제4조(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 또는 제7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5조의 인증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8. 3., 2019. 9. 27., 2021. 12. 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도시·군 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분야(이하 “전문분야”라 한다)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2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3의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에 따라 구성하되,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 중 지형, 문화재 발굴 등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5. 8. 3., 2021. 12. 3.>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그 통보 내용을 참고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

[제목개정 2015. 8. 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2. 3.>

**제5조(인증 기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2. 평가항목별 목적, 방법, 배점, 산출기준,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

② 주무부장관은 인증 기준을 제정·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5. 8. 3.]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12조의2로 이동 <2021. 12. 3.>]

**제6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 인증 대상, 인증날짜, 인증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명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③ 인증을 받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인증시설”이라 한다) 및 인증을 받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시·군·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소유자등은 해당 인증시설과 인증지역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④ 인증기관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증시설의 경우에는 인증명판을, 인증지역의 경우에는 인증안내판을 소유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인증서, 인증명판 또는 인증안내판을 받은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소유자등은 인증받은 사실을 대외에 공표하거나 인증명판을 부착하는 등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

⑥ 삭제 <2021. 12. 3.>

⑦ 삭제 <2021. 12. 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12. 3.>]

**제7조(재심사 요청)**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2. 3.>]

**제8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소유자등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인증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1. 삭제 <2021. 12. 3.>

2. 삭제 <2021. 12. 3.>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인증서를 소유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③ 예비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

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중 현장조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2021. 12. 3.>

⑤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후 1년 이내에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한다. <신설 2015. 8. 3., 2021. 12. 3.>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2. 3.>]

**제9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에 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②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 연장 신청서에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12. 3.]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12. 3.>]

**제10조(인증의 사후관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주무부장관은 매년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이하 “인증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인증기관 신청자가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인증기관 신청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인증기관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21. 12. 3.>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인증과 관련한 연구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전문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3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해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2. 4. 13., 2015. 8. 3., 2021. 12. 3.>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 ③ 제1항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심사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시설 또는 인증지역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주무부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인증기관 신청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별로 전문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 ⑤ 주무부장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2021. 12. 3.>
- ⑥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무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12. 3.>]

**제12조(인증기관의 의무 등)** ① 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영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실적 및 인증업무의 추진 상황을 주무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과 7월 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③ 인증기관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심사전문인력 및 업무 처리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8. 3.>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8조로 이동 <2021. 12. 3.>]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21. 12. 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2는 제10조로 이동 <2021. 12. 3.>]

**제12조의3(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
2. 인증에 관한 통계 작성·관리 지원
3. 그 밖에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인증 현황과 관련 통계 자료: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③ 주무부장은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10에 따라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4개 이상의 전문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상근인력으로 1명 이상 보유할 것
    - 가.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
    - 나.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다.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라.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마.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 바. 장애인복지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후 3년 이상 인증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인증운영기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출 것
  3. 그 밖에 주무부장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3.]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1. 12. 3.>]

- 제12조의4(인증 수수료)** ① 법 제10조의11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주무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11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환불 사유, 반환 범위, 납부 기간, 그 밖에 인증 수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목개정 2021. 12. 3.]

[제12조의3에서 이동 <2021. 12. 3.>]

- 제13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무부장은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 인증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증수수료 등 인증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인증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무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3. 28., 2021. 12. 3.>
1. 보건복지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위원장은 인증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8.>
  - ⑦ 인증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⑧ 인증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15. 8. 3.]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증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증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증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28.]

**제15조(위원의 해촉)** 주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 3. 28.]

부칙 <제918호, 2021.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7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 서식

[별표 1]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

[별표 3]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4항 관련)

[별표 4]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2021. 12. 3.>

**인증여부 및 인증등급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지역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표에 따른다.

| 등급     | 등급 기준                             |
|--------|-----------------------------------|
| 최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
| 우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
| 일반 등급  |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

[별표 2] <개정 2021. 12. 3.>

**인증 대상별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

| 인증 대상 |           |          | 인증심사단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                                     |
|-------|-----------|----------|--|
| 지역    |           |          |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
| 개별 시설 | 제2조 제1호가목 | 공원       | 조경,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       |           | 공원 외의 시설 |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       | 제2조 제1호나목 | 교통수단     | 교통,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       |           | 여객시설     | 건축,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       |           | 도로       | 토목, 교통, 도시·군계획,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3명 이상         |

※ 인증심사단의 구성원은 인증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전문분야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1. 12. 3.>

**인증 대상별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제4조제4항 관련)

| 인증 대상 |           |          | 인증심의위원회의 전문분야 및 구성방법                                   |
|-------|-----------|----------|--|
| 지역    |           |          | 도시·군계획, 건축, 토목, 조경,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7명 이상 |
| 개별 시설 | 제2조 제1호가목 | 공원       | 조경,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
|       |           | 공원 외의 시설 | 건축,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
|       | 제2조 제1호나목 | 교통수단     | 교통, 토목,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
|       |           | 여객시설     | 건축, 교통,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
|       |           | 도로       | 토목, 교통, 도시·군계획, 장애인복지(편의시설 분야를 포함한다) 분야의 5명 이상         |

※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인증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전문분야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 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행정처분 중 가장 중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다.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 나. 제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다.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지정 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4호 | 지정 취소  |          |          |
| 마.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 제1항제5호 | 지정 취소  |          |          |



## 10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일부개정.]

[시행 2018. 8.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 일부개정.]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등

[시행 2018. 8. 1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다.

**제3조(인증명판등)** ①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인증명판 및 인증안내판(이하 "인증명판등" 이라 한다.) 도안은 별표 7과 같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유자등에게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2조에 따른 예비인증의 경우에는 인증명판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증 수수료)** ①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 연장 수수료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인증대상시설에 대한 재평가(증축, 개축 등)가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인증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인증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지역으로 항공료 및 선박비용이 발생(왕복실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신청하는 소유자등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수수료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유자등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수수료 납부까지의 기간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환불)** ① 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신청 접수 후 서류보완 요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90
2. 인증신청 접수 후 인증심사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70
3. 인증심사 후 인증심의 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 수수료의 100분의 30
4. 인증심의 후 취소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② 규칙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인증수수료의 환불절차 및 반환방법은 인증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7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 ②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인증운영위원회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증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18-163호, 2018. 8.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8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 수수료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인증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인증 신청이 접수된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공원 및 건축물 인증지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제4조 관련)

<지역 및 개별시설(공원,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인증>

[단위: 만원]

| 구 분              | 지역 인증              |                     |             | 개별시설 인증              | 비 고   |                               |
|------------------|--------------------|---------------------|-------------|----------------------|-------|-------------------------------|
|                  | 10만㎡이상~<br>200만㎡미만 | 200만㎡이상~<br>300만㎡미만 | 300만㎡<br>이상 | 교통수단,<br>여객시설,<br>도로 |       |                               |
| 본<br>인<br>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br>(일수)                |
|                  | 현장심사비              | 125(1)              | 250(2)      | 375(3)               | 75(1) |                               |
|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                  | 간접비                | 13                  | 17          | 20                   | 8     | 위비용3%                         |
|                  | 교통비                | 180                 | 240         | 300                  | 120   |                               |
|                  | 계                  | 618                 | 807         | 995                  | 403   |                               |
| 예<br>비<br>인<br>증 | 심사비                | 125                 | 125         | 125                  | 75    | 25만원/일<br>(일수)                |
|                  | 심의비                | 175                 | 175         | 175                  | 125   |                               |
|                  | 간접비                | 9                   | 9           | 9                    | 6     | 위비용3%                         |
|                  | 교통비                | 120                 | 120         | 120                  | 80    | *현장실사가 필<br>요한 경우 수수<br>료에 포함 |
|                  | 계                  | 429                 | 429         | 429                  | 286   |                               |

<개별시설(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단위: 연면적, 원]

| 구 분              | 300㎡미만<br>(제1구간) | 300㎡이상<br>~<br>1,000㎡미만<br>(제2구간) | 1,000㎡이상<br>~<br>3,000㎡미만<br>(제3구간) | 3,000㎡이상<br>~<br>10,000㎡미만<br>(제4구간) | 10,000㎡<br>이상<br>(제5구간) |           |
|------------------|------------------|-----------------------------------|-------------------------------------|--------------------------------------|-------------------------|-----------|
|                  | 본<br>인<br>증      | 기준 수수료                            | 4,030,000                           |                                      |                         |           |
| 적용 요율            |                  | 0.5                               | 0.8                                 | 1.0                                  | 1.2                     | 1.5       |
| 수수료              |                  | 2,015,000                         | 3,224,000                           | 4,030,000                            | 4,836,000               | 6,045,000 |
| 예<br>비<br>인<br>증 | 기준 수수료           | 2,060,000                         |                                     |                                      |                         |           |
|                  | 적용 요율            | 0.5                               | 0.8                                 | 1.0                                  | 1.2                     | 1.5       |
|                  | 수수료              | 1,030,000                         | 1,648,000                           | 2,060,000                            | 2,472,000               | 3,090,000 |

※ 단, 개별시설의 제5구간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전날까지 1.25요율 적용  
(본인증: 5,037,500원, 예비인증: 2,575,000원), 부가세 별도

| 비 목                | 세부항목      | 본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                                      |
|--------------------|-----------|---|--------------------------------------|
| 인건비<br>(A)         | 서류 및 현장심사 | 750천원   | 250천원×3인                             |
|                    | 심 의 비     | 750천원   | 150천원×5인                             |
|                    | 행정인건비     | 1,000천원                                       | 224천원×1인×15일×0.2<br>224천원×1인×15일×0.1 |
| 기술경비(B)            |           | 500천원   | (A) × 0.2                            |
| 교 통 비(C)           |           | 250천원   | 50천원×5인                              |
| 간접경비<br>(사후관리비 포함) |           | 780천원   | (A)×0.3                              |
| 합 계                |           | 4,030천원                                       |                                      |
| 비 고                |           |   |                                      |
| 비 목                | 세부항목      | 예 비 인 증(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 인증 기준수수료) |                                      |
| 인건비<br>(A)         | 서류심사      | 750천원   | 250천원×3인                             |
|                    | 현장심사      |   |                                      |
|                    | 심 의 비     | 750천원   | 150천원×5인                             |
|                    | 행정인건비     | 330천원   | 224천원×1인×15일×0.1                     |
| 기술경비(B)            |           | 180천원   | (A) × 0.1                            |
| 교 통 비(C)           |           |   |                                      |
| 간접경비(D)            |           | 50천원  |                                      |
| 합 계                |           | 2,060천원                                       |                                      |
| 비 고                |           | 현장점검(또는 심사) 필요시 750천원 추가                      |                                      |

## 1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관련 참고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별표 2의3]관련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4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20. 2. 4., 2020. 6. 9.>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 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 고등교육법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51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496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의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의료원법 )

[시행 2021. 9. 24.] [법률 제1797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分院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지역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1.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分院을 두는 경우

2. 지방의료원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지방의료원을 신축·이전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상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2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分院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12. 2. 1.]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약칭: 지방출자출연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89호, 2020. 6. 9., 일부개정]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약칭: 지방연구원법 )

[시행 2016. 11. 30.] [법률 제14195호, 2016. 5. 2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연(出捐)·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20호, 2020. 12. 8., 타법개정]

####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 I. 시설의 종류

| 구분       |          | 시설설치 내용   |
|----------|----------|---|
| 공통<br>필수 | 편의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li> <li>·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li> <li>·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li> <li>·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li> <li>·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li> </ul> |
|          | 실내<br>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li> <li>·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li> <li>·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li> <li>· 보조 휠체어</li> </ul>   |
|          | 실내체육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li> </ul>  |
| 실외<br>시설 | 야외경기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장 진입 시설</li> </ul>   |
|          | 생활체육공원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li> </ul>   |

##### II.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 12 C.S.R 계수

---





## C.S.R. 계수 (미끄럼저항계수)

| C.S.R.        | 미끄러움 정도     |
|---------------|-------------|
| 1.0 이상        | 매우 미끄럽지 않음  |
| 0.8 이상 1.0 미만 | 미끄럽지 않음     |
| 0.6 이상 0.8 미만 | 그다지 미끄럽지 않음 |
| 0.4 이상 0.6 미만 | 조금 미끄러움     |
| 0.2 이상 0.4 미만 | 상당히 미끄러움    |
| 0.2 미만        | 매우 미끄러움     |

**※ C.S.R 계수(미끄럼저항계수)란?**

- 사람이 신발 착용상태에서 보행할 때 미끄럼 감각을 수치화한 것으로, Coefficient of Slip Resistance의 약어

**※ 바닥마감의 미끄럼저항계수 시험성적서 확인사항**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시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 목업 테스트(MockUp Test)를 통해 아래의 내용이 시험성적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① 시료명    ② 시료채취장소    ③ 공사명 (현장명)    ④ 신청자
  - ⑤ 시험방법 및 시험조건(시험편의 표면상태)
- KS M-3510 또는 KS F 2601 바닥미끄럼 관련 시험방법을 사용
- 습윤상태 & 표면이 평활한 합성고무시트(구둣발) 표면상태에서 시험



## 13 경사로 기울기

---





| 1/N       |               |               | %   |         |         | 각도  |        |         |
|-----------|---------------|---------------|-----|---------|---------|-----|--------|---------|
| 1/N       | %             | 각도            | %   | 1/N     | 각도      | 각도  | 1/N    | %       |
| 1         | 100.000%      | 57.296°       | 1%  | 100.000 | 0.573°  | 1°  | 57.299 | 1.745%  |
| 2         | 50.000%       | 28.648°       | 2%  | 50.000  | 1.146°  | 2°  | 28.654 | 3.490%  |
| 3         | 33.333%       | 19.099°       | 3%  | 33.333  | 1.719°  | 3°  | 19.107 | 5.234%  |
| 4         | 25.000%       | 14.324°       | 4%  | 25.000  | 2.292°  | 4°  | 14.336 | 6.976%  |
| 5         | 20.000%       | 11.459°       | 5%  | 20.000  | 2.866°  | 5°  | 11.474 | 8.716%  |
| 6         | 16.667%       | 9.549°        | 6%  | 16.667  | 3.440°  | 6°  | 9.567  | 10.453% |
| 7         | 14.286%       | 8.185°        | 7%  | 14.286  | 4.014°  | 7°  | 8.206  | 12.187% |
| 8         | 12.500%       | 7.162°        | 8%  | 12.500  | 4.589°  | 8°  | 7.185  | 13.917% |
| 9         | 11.111%       | 6.366°        | 9%  | 11.111  | 5.164°  | 9°  | 6.392  | 15.643% |
| 10        | 10.000%       | 5.730°        | 10% | 10.000  | 5.739°  | 10° | 5.759  | 17.365% |
| 11        | 9.091%        | 5.209°        | 11% | 9.091   | 6.315°  | 11° | 5.241  | 19.081% |
| <b>12</b> | <b>8.333%</b> | <b>4.775°</b> | 12% | 8.333   | 6.892°  | 12° | 4.810  | 20.791% |
| 13        | 7.692%        | 4.407°        | 13% | 7.692   | 7.470°  | 13° | 4.445  | 22.495% |
| 14        | 7.143%        | 4.093°        | 14% | 7.143   | 8.048°  | 14° | 4.134  | 24.192% |
| 15        | 6.667%        | 3.820°        | 15% | 6.667   | 8.627°  | 15° | 3.864  | 25.882% |
| 16        | 6.250%        | 3.581°        | 16% | 6.250   | 9.207°  | 16° | 3.628  | 27.564% |
| 17        | 5.882%        | 3.370°        | 17% | 5.882   | 9.788°  | 17° | 3.420  | 29.237% |
| <b>18</b> | <b>5.556%</b> | <b>3.183°</b> | 18% | 5.556   | 10.370° | 18° | 3.236  | 30.902% |
| 19        | 5.263%        | 3.016°        | 19% | 5.263   | 10.953° | 19° | 3.072  | 32.557% |
| 20        | 5.000%        | 2.865°        | 20% | 5.000   | 11.537° | 20° | 2.924  | 34.202% |
| 21        | 4.762%        | 2.728°        | 21% | 4.762   | 12.122° | 21° | 2.790  | 35.837% |
| 22        | 4.545%        | 2.604°        | 22% | 4.545   | 12.709° | 22° | 2.669  | 37.461% |
| 23        | 4.348%        | 2.491°        | 23% | 4.348   | 13.297° | 23° | 2.559  | 39.073% |
| <b>24</b> | <b>4.167%</b> | <b>2.387°</b> | 24% | 4.167   | 13.887° | 24° | 2.459  | 40.674% |
| 25        | 4.000%        | 2.292°        | 25% | 4.000   | 14.478° | 25° | 2.366  | 42.262% |

| 1/N |        |        | %   |       |         | 각도  |       |         |
|-----|--------|--------|-----|-------|---------|-----|-------|---------|
| 1/N | %      | 각도     | %   | 1/N   | 각도      | 각도  | 1/N   | %       |
| 26  | 3.846% | 2.204° | 26% | 3.846 | 15.070° | 26° | 2.281 | 43.837% |
| 27  | 3.704% | 2.122° | 27% | 3.704 | 15.664° | 27° | 2.203 | 45.399% |
| 28  | 3.571% | 2.046° | 28% | 3.571 | 16.260° | 28° | 2.130 | 46.947% |
| 29  | 3.448% | 1.976° | 29% | 3.448 | 16.858° | 29° | 2.063 | 48.481% |
| 30  | 3.333% | 1.910° | 30% | 3.333 | 17.458° | 30° | 2.000 | 50.000% |
| 31  | 3.226% | 1.848° | 31% | 3.226 | 18.059° | 31° | 1.942 | 51.504% |
| 32  | 3.125% | 1.790° | 32% | 3.125 | 18.663° | 32° | 1.887 | 52.992% |
| 33  | 3.030% | 1.736° | 33% | 3.030 | 19.269° | 33° | 1.836 | 54.464% |
| 34  | 2.941% | 1.685° | 34% | 2.941 | 19.877° | 34° | 1.788 | 55.919% |
| 35  | 2.857% | 1.637° | 35% | 2.857 | 20.487° | 35° | 1.743 | 57.358% |
| 36  | 2.778% | 1.592° | 36% | 2.778 | 21.100° | 36° | 1.701 | 58.779% |
| 37  | 2.703% | 1.549° | 37% | 2.703 | 21.716° | 37° | 1.662 | 60.182% |
| 38  | 2.632% | 1.508° | 38% | 2.632 | 22.334° | 38° | 1.624 | 61.566% |
| 39  | 2.564% | 1.469° | 39% | 2.564 | 22.954° | 39° | 1.589 | 62.932% |
| 40  | 2.500% | 1.432° | 40% | 2.500 | 23.578° | 40° | 1.556 | 64.279% |
| 41  | 2.439% | 1.397° | 41% | 2.439 | 24.205° | 41° | 1.524 | 65.606% |
| 42  | 2.381% | 1.364° | 42% | 2.381 | 24.835° | 42° | 1.494 | 66.913% |
| 43  | 2.326% | 1.332° | 43% | 2.326 | 25.468° | 43° | 1.466 | 68.200% |
| 44  | 2.273% | 1.302° | 44% | 2.273 | 26.104° | 44° | 1.440 | 69.466% |
| 45  | 2.222% | 1.273° | 45% | 2.222 | 26.744° | 45° | 1.414 | 70.711% |
| 46  | 2.174% | 1.246° | 46% | 2.174 | 27.387° | 46° | 1.390 | 71.934% |
| 47  | 2.128% | 1.219° | 47% | 2.128 | 28.034° | 47° | 1.367 | 73.135% |
| 48  | 2.083% | 1.194° | 48% | 2.083 | 28.685° | 48° | 1.346 | 74.314% |
| 49  | 2.041% | 1.169° | 49% | 2.041 | 29.341° | 49° | 1.325 | 75.471% |
| 50  | 2.000% | 1.146° | 50% | 2.000 | 30.000° | 50° | 1.305 | 76.604% |



## 14 자주 사용하는 점자표기 문구

---







| 위생시설                     |                          |                          |
|--------------------------|--------------------------|--------------------------|
| 장애인화장실                   | 남자화장실                    | 여자화장실                    |
| ⠠⠠⠠⠠⠠⠠⠠⠠⠠⠠⠠⠠⠠⠠⠠⠠⠠⠠⠠⠠⠠⠠⠠⠠ | ⠠⠠⠠⠠⠠⠠⠠⠠⠠⠠⠠⠠⠠⠠⠠⠠⠠⠠⠠⠠     | ⠠⠠⠠⠠⠠⠠⠠⠠⠠⠠⠠⠠⠠⠠⠠⠠⠠⠠⠠⠠⠠⠠⠠⠠ |
| 다목적화장실                   | 열림                       | 닫힘                       |
| ⠠⠠⠠⠠⠠⠠⠠⠠⠠⠠⠠⠠⠠⠠⠠⠠⠠⠠⠠⠠⠠⠠⠠⠠ | ⠠⠠⠠⠠⠠⠠                   | ⠠⠠⠠⠠⠠⠠                   |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                 | ⠠⠠⠠⠠⠠⠠⠠⠠                 | ⠠⠠⠠⠠⠠⠠⠠⠠⠠⠠⠠⠠⠠⠠⠠⠠⠠⠠⠠⠠     |
| 샤워실                      | 탈의실                      | 온 냉                      |
| ⠠⠠⠠⠠⠠⠠⠠⠠                 | ⠠⠠⠠⠠⠠⠠⠠⠠                 | ⠠⠠⠠⠠⠠⠠⠠⠠                 |
| 안내시설                     |                          |                          |
| 경사로                      | 승강기                      | 계단                       |
| ⠠⠠⠠⠠⠠⠠⠠⠠                 | ⠠⠠⠠⠠⠠⠠⠠⠠⠠⠠⠠⠠⠠⠠⠠⠠⠠⠠⠠⠠     | ⠠⠠⠠⠠⠠⠠⠠⠠                 |
| 안내데스크                    | 현위치                      | 민원실                      |
| ⠠⠠⠠⠠⠠⠠⠠⠠⠠⠠⠠⠠⠠⠠⠠⠠⠠⠠⠠⠠⠠⠠⠠⠠ | ⠠⠠⠠⠠⠠⠠⠠⠠⠠⠠⠠⠠⠠⠠⠠⠠⠠⠠⠠⠠     | ⠠⠠⠠⠠⠠⠠⠠⠠⠠⠠⠠⠠⠠⠠⠠⠠⠠⠠⠠⠠⠠⠠⠠⠠ |
| 다목적실                     | 수유실                      | 행정실                      |
| ⠠⠠⠠⠠⠠⠠⠠⠠⠠⠠⠠⠠⠠⠠⠠⠠⠠⠠⠠⠠⠠⠠⠠⠠ | ⠠⠠⠠⠠⠠⠠⠠⠠⠠⠠⠠⠠⠠⠠⠠⠠⠠⠠⠠⠠     | ⠠⠠⠠⠠⠠⠠⠠⠠⠠⠠⠠⠠⠠⠠⠠⠠⠠⠠⠠⠠⠠⠠⠠⠠ |
| 식당                       | 도서관                      | 사무실                      |
| ⠠⠠⠠⠠⠠⠠⠠⠠⠠                | ⠠⠠⠠⠠⠠⠠⠠⠠⠠⠠⠠⠠⠠⠠⠠⠠⠠⠠⠠⠠     | ⠠⠠⠠⠠⠠⠠⠠⠠⠠⠠⠠⠠⠠⠠⠠⠠⠠⠠⠠⠠⠠⠠⠠⠠ |
| 공원                       |                          |                          |
| BF보행로                    | 안전보행로                    | 산책로                      |
| ⠠⠠⠠⠠⠠⠠⠠⠠⠠⠠⠠⠠⠠⠠⠠⠠⠠⠠⠠⠠⠠⠠⠠⠠ | ⠠⠠⠠⠠⠠⠠⠠⠠⠠⠠⠠⠠⠠⠠⠠⠠⠠⠠⠠⠠⠠⠠⠠⠠ | ⠠⠠⠠⠠⠠⠠⠠⠠⠠⠠⠠⠠⠠⠠⠠⠠⠠⠠⠠⠠⠠⠠⠠⠠ |
| 놀이시설                     | 관리사무실                    | 주차장                      |
| ⠠⠠⠠⠠⠠⠠⠠⠠⠠⠠⠠⠠⠠⠠⠠⠠⠠⠠⠠⠠⠠⠠⠠⠠ | ⠠⠠⠠⠠⠠⠠⠠⠠⠠⠠⠠⠠⠠⠠⠠⠠⠠⠠⠠⠠⠠⠠⠠⠠ | ⠠⠠⠠⠠⠠⠠⠠⠠⠠⠠⠠⠠⠠⠠⠠⠠⠠⠠⠠⠠⠠⠠⠠⠠ |
| 매표소                      | 판매점                      | 안내                       |
| ⠠⠠⠠⠠⠠⠠⠠⠠⠠⠠               | ⠠⠠⠠⠠⠠⠠⠠⠠⠠⠠⠠⠠⠠⠠⠠⠠⠠⠠⠠⠠     | ⠠⠠⠠⠠⠠⠠⠠⠠⠠⠠               |







05836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길 26 (문정동)  
에이치비즈니스파크 D동 903호 UD연구센터 BF인증실  
Tel.02-6287-0881. [bfkriea@daum.net](mailto:bfkriea@daum.net)  
<http://www.kriea.re.kr>